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V)

UNCITRAL 담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권영준



글로벌 법제전략 연구 13-22-⑧-5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V)
**UNCITRAL 담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권 영 준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V)

UNCITRAL 담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Study on the 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Rights Registry

연구자 :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Kwon, Young Joon

2013. 12. 13.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배 경

-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동산담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의 제정과정에서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이하 “입법지침”이라고 한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UNCITRAL 제6실무작업반(Working Group VI)에서는 입법지침에 기초하여 등기제도에 관한 세밀한 텍스트를 담은 『담보등기 실행에 관한 UNCITRAL 지침(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Rights Registry, 이하 “등기지침”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2013년 7월 UNCITRAL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음.

□ 목 적

- 우리 동산담보법에 영향을 미친 UNCITRAL 입법지침의 후속 세부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기지침과 이에 대한 주석(commentary)의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연구를 위해 등기지침이 우리 법에 시사하는 바를 덧붙이고자 함.

II. 주요 내용

□ UNCITRAL 등기지침의 제정배경

- UNCITRAL은 2010년 6월 총회에서는 제6실무작업반이 동산담보등기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등기제도의 성공적 실행에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운영과 관련된 법적, 행정적인 사항을 담은 텍스트를 마련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실무작업반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4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여섯 차례의 회의를 거쳐 등기지침 초안을 완성하였고, UNCITRAL은 2013년 7월 총회를 통해 이를 승인하였음.

□ UNCITRAL 등기지침의 세부적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등기지침과 그 주석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그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담보등기제도의 설립과 기능
 - 등기서비스에 대한 접근
 - 등기제도의 기초
 - 최초 통지의 등기
 - 수정 및 말소 통지의 등기
 - 검색 기준과 검색 결과
 - 등기 및 검색수수료

□ UNCITRAL 등기지침의 시사점

- 등기지침은 등기제도의 효율성과 진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산담보법과 기본적인 이상을 같이 함.

- 하지만 등기지침은 우리나라와 달리 통지등기(notice registra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짐.
- 그러므로 등기지침이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은 바로 통지등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지등기제도는 부동산과 동산의 근본적인 차이에 주목하여 부동산보다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일방의 신청에 의한 등기, 등기관이 무개입, 선등기의 허용, 사후말소에 의한 진정성 제고 등의 특징을 가짐.
- 통지등기제도는 우리나라가 취하는 권리등기제도와 현저하게 다른 틀을 갖추고 있어 당장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산담보등기에 대해서는 통지등기제도를 채택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등기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중장기적으로는 통지등기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도입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아직 우리나라에 소개된 바 없는 UNCITRAL 등기지침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이 규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동산담보등기제도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주제어 : UNCITRAL, 동산담보, 채권담보, 통지등기, 동산·채권의 담보 등에 관한 법률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s

Background

-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hereinafter “Legislative Guide”) is known to have influenced the newly enacted 『Secured Transactions Law on Movables and Receivables』 (hereinafter “secured transactons law”) that has been in effect as of Jul. 1. 2012. in Korea.
- After a successful completion on the Legislative Guide, Working Group VI in the UNCITRAL has endeavored to make detailed rules and regulations on the security rights registry and has completed the text titled 『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Rights Registry』(hereinafter “Registry Guide”). The text was subsequently endorsed by UNCITRAL in July 2013.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Registry Guide including its recommendation and commentary, and seek possible implication on the future of the Korean security rights law.

II . Main Contents

The Initiation and the Progress of the Work

- UNCITRAL has agreed to mandate Working Group VI to prepare the text that address the various legal, administrative, infrastructural and operational questions that needed to be resolved to ensure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a registry.
- The Working Group has prepared the relevant text through six sessions that were held from November 2010 until April 2013. The completed text was finally endorsed by UNCITRAL in July 2013.

Contents of the Registry Guide

-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tents of the Registry Guide as well as commentary. Following are main issues addressed in the paper.
 -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security rights registry
 - Access to registry services
 - Basic concepts and rules of the registration
 - Registration of initial notices
 - Registration of amendment and cancellation notices
 - Search criteria and search results
 - Registration and search fees

Implication of the Registry Guide

- The Registry Guide pursue efficiency and accuracy of the registration, as is the case with secured transactions law in Korea.
- However, the Registry Guide differs significantly from its Korean counterpart in that it adopts a notice registration system as opposed to a title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This is where implication of the Registry Guide can be found.

- The notice registration system focuses on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immovables and movables, and seeks to facilitate swift and efficient registration on movables by allowing a creditor to unilaterally file a registration (even a prior registration) without being intervened by the registry staffs, and allowing relevant parties to quickly redress it in case of wrong registration based on wrong notification.
- Given that new law has been in effect from only recently, it may be too early to adopt the notice registration system that is far different from what Korea has in terms of registration system. However, we need to take close note of this system considering that it is gaining grounds throughout world, continue the study on this system in terms of enhancing efficiency of the registration system, and seek the possibility of employing it in our framework.

III. Expected Effect

- By comprehensively and detailedly introducing the new Registry Guide to Korean readers in this paper, one may expect broader understanding on the UNCITRAL works in the area of secured transaction law along with some implication on the future framework of the Korean security right registry system.

➤ **Key Words** : **UNCITRAL**, Secured Transactions Law, Movables, Receivables, Notice Registration

목 차

요 약 문	5
Abstract	9
제 1 장 서 론	15
제 2 장 UNCITRAL 담보등기지침의 제정 배경	21
제 1 절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의 제정	21
1. 합리적인 담보제도의 중요성	21
2. 합리적인 담보제도의 달성을 위한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제정	24
제 2 절 UNCITRAL 담보등기지침 제정의 배경과 경과	26
제 3 장 UNCITRAL 담보등기지침의 세부적 내용	29
제 1 절 개 관	29
제 2 절 등기소의 설립과 기능	31
1. 내 용	31
2. 권고사항	35
제 3 절 등기서비스에 대한 접근	37
1. 내 용	37
2. 권고사항	41
제 4 절 등기제도의 기초	44
1. 내 용	44

2. 권고사항	54
제 5 절 최초 통지의 등기	59
1. 개 관	59
2. 담보설정자에 관한 정보	59
3. 담보권자에 관한 정보	61
4. 담보자산에 대한 기술	62
5. 기 타	64
6. 권고사항	65
제 6 절 수정 및 말소통지의 등기	68
1. 내 용	68
2. 권고사항	77
제 7 절 검색 기준과 검색 결과	80
1. 내 용	80
2. 권고사항	82
제 8 절 등기 및 검색 수수료	83
1. 내 용	83
2. 권고사항	85
제 4 장 UNCITRAL 담보등기지침의 시사점	87
제 1 절 우리나라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87
제 2 절 우리나라 동산담보등기제도에 대한 시사점	93
1. UNCITRAL 입법지침 및 등기지침과의 근본적 차이점	93
2. 통지등기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96

제 5 장 결 론	99
부록 : 권고사항(Recommendations) 원문/번역문 대조표	101
참 고 문 헌	131

제1장 서론

우리나라의 담보거래에서는 부동산 담보거래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여 왔다.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등기를 통한 공시가 용이하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저당권이나 부동산 담보신탁 등 부동산담보에 관한 제반 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산이나 채권을 이용한 담보거래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담보거래와 비교해 보면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동산에 있어서 점유, 채권에 있어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 담보거래를 대외적으로 공시할 방법이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와 비교하면 미약하기 때문에 동산 등의 담보거래 신장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왔다.

그러나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자산으로 활용할 현실적인 필요성은 크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동산이나 채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비해 동산이나 채권은 담보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겨져 왔지만 이제 그러한 통념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동산 역시 집합화되면 부동산 못지 않은 가치를 지닐 수 있고, 채권은 액면에 제한이 없어 채권발생원인과 그 내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부동산을 능가하는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동산이나 채권은 기업자산 또는 개인자산에서 점점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다 쉽게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담보거래금융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는 금융제공자나 금융수요자 모두에게 유익한 일일 뿐만 아니라 금융의 원활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를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침내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담보법”이라고

한다)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¹⁾ 이 법은 동산, 채권 및 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에는 동산담보대출이 예상만큼 활성화되지 않아 제도의 정착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하였지만,²⁾ 시간이 흐르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산 및 채권담보대출상품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활용도도 제고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³⁾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타당할 뿐만 아니라 동산담보거래의 확장에 필요한 주변의 환경도 지속적으로 우호적으로 변하리라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는 담보거래에 있어서 비중있는 제도로 자리잡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동산담보법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점은 동산과 채권의 담보등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산과 채권에 대해서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에 의한 담보공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는 인도나 채권양도통지나 승낙 등 불완전한 공시방법에 의존해야 했던 종전의 법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등기에 의한 담보공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여전히 종전의 양도담보나 질권 등 비등기 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채권자는 담보확보에 관하여 하나의 선택지를 더 가지게 된 셈이다.

-
- 1) 이에 대해서는 우선 김재형, “담보제도의 개혁방안 - 동산 및 채권 담보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제106호 (2008. 9) 참조.
 - 2)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기계, 재고자산 등 동산 담보물에 대한 기업들의 관리 부실로 인한 소유권 확인 내지 담보물 확보의 어려움, 감정평가사들의 역량 부족, 은행들의 소극적 태도 등을 꼽고 있다.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309271451227750456> 참조.
 - 3) 금융계에 따르면 9월 주요 은행 동산담보대출실적은 346억원으로서 256억원에 그쳤던 8월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매일경제 2013. 10. 14.자 “은행 마케팅 효과? 동산담보대출 반짝 증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80478> 참조. 일본의 경우에도 동산담보대출제도 시행 초기인 2006년 530억엔에서 2010년 3월말 3000억엔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前註 참조.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은 그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범이므로 그 제정 과정에서 외국의 논의를 참조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rade Law, 이하 “UNCITRAL”이라고 한다)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이하 “입법지침”이라고 한다)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법지침은 동산 및 채권담보에 관한 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각국의 담보법제를 선진화하기 위해 UNCITRAL 담보분야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에서 2002년부터 2007년에 걸쳐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입법지침은 문자 그대로 지침에 불과하다. 유연성과 포괄성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각국의 담보법제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와 비정부 단체에서 파견된 대표단의 참여 속에 장기간에 걸친 연구와 토의를 거쳐 생산된 결과물인만큼 그 방향성과 내용을 참조하고 음미할 가치는 크다. 이러한 가치는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의 입법과정에서도 빛을 발휘하였다. 가령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의 입법과정에서는 동산담보나 채권담보 중 상당수(특히 채권담보의 경우)가 양도의 형식을 띠는 점을 고려하여 일본과 마찬가지로 동산이나 채권의 양도등기제도를 도입하는 방향도 논의되었으나 결국 담보의 실질을 중시하여 이를 모두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방향을 채택한 것도 입법지침의 영향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입법지침이 완성된 이후에도 UNCITRAL은 담보제도의 정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일환으로 UNCITRAL 담보분야 실무작업반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세부지침 작업을 마친 뒤⁴⁾ 최근 수년간 입법지침상 통지등기제도에 기초하여 동산 등 담보에 관

4) 이에 관해서는 손승우, “UNCITRAL 지식재산권 담보논의와 국내 입법방향”,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2008) 참조.

한 등기제도에 관한 세밀한 지침을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2010년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된 제18차 실무작업반 회의는 2013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실무작업반의 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2013년 7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UNCITRAL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2013년 7월 16일 UNCITRAL은 『담보등기실행에 관한 UNCITRAL 지침(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ity Rights Registry, 이하 “등지침”이라고 한다)』을 채택하였다. 이 등지침은 2013년 9월 현재 최종적인 정리 및 교정작업을 거치고 있고 향후 UNCITRAL의 홈페이지(www.uncitral.org)에 그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등지침은 효율적인 동산 및 채권담보등기제도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권고사항과 주해를 담고 있다. 이 지침은 등기제도라는 측면에서 종래의 입법지침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지침은 그 포괄적 성격상 등기제도에 관하여 충분히 세세한 규율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담보등기제도는 동산담보제도의 성공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이다. 등지침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특히 담보등기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이는 세계의 담보법 조화 노력에도 유익하다. 국경을 넘어선 담보거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각국의 담보제도 조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등기제도의 조화는 이러한 담보제도 조화의 필수적인 선행조건이다. 따라서 이번 등지침은 각국의 담보등기제도가 서로 가까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런데 등기제도에 국한하여 보자면 입법지침은 통지등기(notice registration) 방식을 채택한 반면,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은 기존 부동산 등기와 마찬가지로 권리등기(title registration)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등기방식의 차이는 현저하고 근본적인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

듯이 동산과 채권담보제도 개혁의 핵심은 그 공시방법, 즉 등기제도의 도입에 있기 때문이다. 그 차이는 동산 등 담보제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차이를 파생시킨다.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은 등기제도에 국한하여 보자면 입법지침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입법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통지등기제도의 도입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동산담보법제에서 등기제도가 가지는 비중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제는 이 점에서 UNCITRAL의 작업결과물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러한 간극이 바람직한 것 인지는 이 보고서의 배후에 깔려 있는 문제의식이기도 하고 향후 본격적인 연구대상이기도 하다.

동산담보법이 시행되는 이 시점에 즈음하여 동산담보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면서도 우리 동산담보법과는 다른 모습의 등기제도를 상정하는 등기지침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우리 동산담보법의 현 주소와 미래의 지향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이 보고서에서는 UNCITRAL 등기지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직 등기지침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았고 단기간 내에 그 내용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등기지침의 내용 자체를 소개하는 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그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권고사항(recommendation)은 전체 내용을 번역하여 본문에는 해당 목차마다 관련 부분을, 부록에는 전문을 각각 수록하였고, 각 권고사항에 대한 주석(commentary)은 본문에 그 중요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서술하였다. 참고로 등기지침의 최종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부득이하게 가장 최근까지 수정된 등기지침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최종판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되나 향후 발표될 최종판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제 2 장 UNCITRAL 담보등기지침의 제정 배경

제 1 절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의 제정

1. 합리적인 담보제도의 중요성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돈의 흐름이 중요하다. 돈의 흐름이 원활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여신(與信)제공자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공급하는 주체이다. 여신제공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신회수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신제공자에게 차주의 신용에 관한 정보가 원활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차주가 채무불이행(default)에 빠졌을 때 사법절차를 통해 여신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송절차와 보전처분절차, 민사집행절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 시스템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만할수록 여신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를 통해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 이는 한 나라의 사법제도가 자본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헤아릴 수 있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여신회수에 필수적인 법적 장치가 바로 담보제도이다. 담보제도를 통해 여신제공자, 즉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확보한다. 채무자는 담보제공을 통해 이자 등 여신비용을 낮출 수 있다. 담보제도가 발달할수록 여신금액은 커지고 여신비용은 줄어든다. 따라서 금융의 원활함을 추구하는 모든 나라들은 나름대로의 담보제도를 발달시켜 왔고, 그 제도의 활용을 촉진할 정책을 고민하여 왔다. 담보제도가 합리화, 선진화, 현대화될수록 그 담보제도가 뒷받침하는 경제 시스템은 건강해진

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담보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 것일까?

첫째, 합리적인 담보제도는 담보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합리적인 담보제도는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뒤에도 그 담보에 내재하는 잔존 자산가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특히 담보자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도 그 교환가치만 이전하는 담보제도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당권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는 저당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면서도 그 장래의 교환가치만 저당권자에게 잠재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저당권의 객체인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저당물에 대해서 여러 명이 순위를 정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잔존가치를 담보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 이러한 논리는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채권 기타 재산권에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담보제도는 비점유형 담보제도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비점유형 담보제도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가장 적합한 계약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담보신탁제도는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신탁계약이라는 계약적 장치를 통해 최대한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합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담보권이 가지는 대세적 효력으로 인하여 담보제도에 관한 법 규정들이 강행규정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연성의 확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담보신탁의 대두에서 목격되듯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장하는 것은 현대적인 담보제도의 중요한 목표이다.

둘째, 합리적인 담보제도는 담보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자산이 가능한 한 담보제도의 외연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는 부동산이

주로 담보자산으로 활용되어 왔다. 부동산의 담보적 가치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담보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공시하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산과 채권, 기타 재산권의 담보적 가치도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의 가치가 커지면서 무형적인 권리의 담보가치 역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자산의 가치를 담보화하여 금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담보제도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다. 한편 시간적 축에서 본다면 위와 같은 담보자산유형의 확산 이외에도 장래 자산으로 담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장래 취득할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삼는다거나 장래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현금의 흐름을 담보 목적으로 삼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담보제도의 외연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이 담보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접근방식보다는 실질적이고 유연한 기능적 접근방식이 더욱 요긴하다. 가령 소유권유보부 매매와 같이 형식에 있어서는 매매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담보인 경우에도 이를 담보제도로 포섭하여 규율하는 것은 담보제도의 외연 확장과 통일적이고 기능적인 규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합리적인 담보제도는 담보자산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되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점유형 담보제도에서는 점유가 이러한 공시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점유는 공시방법으로서는 불완전하다. 점유 그 자체도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외관만 봐서는 누가 점유주체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제도에서는 등기 또는 등록이 가장 확실한 공시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가 오랫동안 공시방법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담보제도는 동산 등에 대해서도 등기 또는 등록의 방법을 통해 공시기능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동산 등에 대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등기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합리적인 담보제도는 담보권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담보제도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권자의 채권을 실현시켜 주는 만족적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보의 객체가 되어 있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현실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 절차는 공적인 절차일 수도 있고 사적인 절차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절차가 잘 정비되어 있을수록 채권자는 담보제도를 이용할 더 큰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실현해야 할 이상 중에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우선권 규칙(priority rule)을 정립하는 것도 포함된다. 담보자산 위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겹치게 되는데 그 이해관계의 주체들을 어떻게 줄세워서 채권을 만족시켜 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그 이외에도 담보자산이 멸실, 훼손 또는 수용되는 등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대체물이나 대금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보권의 효율적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합리적인 담보제도의 달성을 위한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제정

2000년 제33차 UNCITRAL 위원회 본회의에서 UNCITRAL은 담보분야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분야에 대해 실무적인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2002년 제35차 본회의에서는 실무작업반을 통해 입법지침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후 약 6년간 12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2007년 2월에 입법지침을 성안하였다. 그 이

후 2007년 12월 제40차 UNCITRAL 위원회 본회의에서 입법지침이 채택되었다.

입법지침은 각국이 현대적인 동산담보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지침을 통해 각국의 동산담보법은 서로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러한 법 조화의 목적 때문에 입법지침은 특정한 국가의 담보법제에 기초하지 않는다.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이슬람법계 등 다양한 법계에서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담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입법지침은 모두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법지침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⁵⁾

제 I 장 적용범위, 담보에 관한 기본적 접근방법과 입법지침의 모든 장에 공통되는 일반적 주제
제 II 장 담보권의 설정 (당사자 간의 효력)
제 III 장 제3자에 대한 담보권의 효력
제 IV 장 등기제도
제 V 장 담보권의 우선권(또는 우선순위 또는 순위)
제 VI 장 담보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 VII 장 제3채무자의 권리와 의무
제 VIII 장 담보권의 실행
제 IX 장 취득금융(acquisition financing)
제 X 장 국제사법(저촉법)
제 XI 장 경과규정
제 XII 장 도산이 담보권에 미치는 영향

5) 석광현,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법무부 (2010), 13면에서 인용.

제 2 절 UNCITRAL 담보등기지침 제정의 배경과 경과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UNCITRAL 제42차 위원회에서는 담보권 입법지침의 후속 작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UNCITRAL 사무국은 2010년 3월 1일부터 3일까지 담보거래 분야에 관한 후속 논의 주제 선정을 위해 국제 집담회(International Colloquium)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동산담보등기(registration of security rights in movable assets), 무중개증권에 대한 담보권(security rights in non-intermediated securities), 담보거래에 대한 모델법(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 담보거래에 대한 계약지침(contractual guide on secured transaction), 지적재산권 라이선싱과 담보부거래에 관한 UNCITRAL 텍스트의 실행(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and implementation of UNCITRAL texts on secured transactions) 등이 후속 논의 주제로 거론되었다.

그 이후 열린 UNCITRAL 제43차 총회(뉴욕, 2010년 6월 21일-7월 9일 개최)에서는 집담회의 논의 결과를 검토한 뒤 동산담보등기에 관하여 논의를 먼저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이 주제에 대한 실무작업반의 검토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결론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있었다.

첫째, 등기제도는 성공적인 담보법제의 설립과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토대이다. 둘째, 입법지침은 등기제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작업을 통하여 입법지침을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이하 ‘입법지침’이라고 한다)은 이미 제4장 등기제도(The Registry System) 부분에서 동산담보등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부속서류로 권고사항

(recommendation)도 상세하게 마련하여 놓고 있었다. 그러므로 실무작업반의 임무는 입법지침에서 등기제도에 관하여 그려놓은 큰 그림을 바탕으로 등기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특화된 세밀하고 기술적인 텍스트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다만 구체적으로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실무작업반의 재량에 맡겨졌다.

등기지침이 성안되기까지 실무작업반의 작업 경과는 다음과 같다.

- ① 제18차 실무작업반 회의(2010년 11월 5-10일, 비엔나)
- ② 제19차 실무작업반 회의(2011년 4월 11-15일, 뉴욕)
- ③ 제20차 실무작업반 회의(2011년 12월 12-16일, 비엔나)
- ④ 제21차 실무작업반 회의(2012년 5월 14-18일, 뉴욕)
- ⑤ 제22차 실무작업반 회의(2012년 12월 10-14일, 비엔나)
- ⑥ 제23차 실무작업반 회의(2013년 4월 8-12일, 뉴욕)

필자는 위 여섯 차례 실무작업반 회의에 계속 참가하였고, 그 이외에 제18차 실무작업반 회의에는 당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정재민 판사, 제1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는 당시 수원지방법원 이창현 판사, 제21차 실무작업반 회의에는 당시 수원지방법원 이창현 판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상용 검사, 제22차 실무작업반 회의에는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주상용 검사, 제23차 실무작업반 회의에는 당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정용환 검사가 각각 필자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단으로 회의에 참가하였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매 회의마다 수십여 차례에 걸친 의견 개진을 통하여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등기지침의 공식 명칭을 제안하여 그것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실무작업반은 주로 UNCITRAL 사무국에서 만든 초안을 토대로 한 문단씩 읽어가면서 방향성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무국에서는 실무작업반 회의 전에 소수의 전문가(expert)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에게 회의

에 상정할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실무작업반 회의가 끝나면 그 주말에 전문가 그룹의 구성원들과 별도로 모여 당해 회의기간동안 이루어졌던 논의를 구체적으로 지침의 주해나 권고사항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필자 역시 이러한 전문가 그룹의 구성원으로 위와 같은 작업에 참여하였다.

실무작업반 논의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논의의 참고자료로 입법지침을 활용하였다. 흔히 UNCITRAL에서는 각국 대표단들이 각국 법제의 내용과 운용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규범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등기지침 작업과정에서는 그러한 개별적인 국가의 제도에 대한 소개나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종종 자신들의 제도를 소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대표단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UNCITRAL의 담보 분야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대표단들이었다. 주도적인 논의 그룹의 발언은 각국 법제로부터는 독립된 UNCITRAL 담보법제의 틀 내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입법지침을 위시하여 UNCITRAL 담보법제의 취지와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발언의 수준과 기여도에 영향을 미쳤다.

제 3 장 UNCITRAL 담보등기지침의 세부적 내용

제 1 절 개 관

입법지침은 현대 담보법제에서 등장하는 많은 쟁점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등기제도는 입법지침이 다루는 수많은 내용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입법지침에서는 제4장에서 등기제도에 관한 주해와 권고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제3장과 제5장에서는 등기와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효력과 담보권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입법지침은 효율적인 담보등기제도를 개발, 운영하는 데에 수반되는 수많은 법적, 기술적, 행정적 쟁점들에 대한 세밀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배경 아래 등기지침은 입법지침에서 그린 큰 그림에 기초하여 등기제도에 관한 세밀한 내용을 담기 위해 성안되었다. 이처럼 등기지침은 입법지침과 조화를 이룰 목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등기지침을 자국법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국가들은 그 전제조건으로 입법지침에서 상정하는 담보법제와 가까운 법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등기지침을 읽는 독자들도 역시 입법지침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실무작업반의 구성원들은 수년간 등기지침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입법지침을 가장 큰 전거로 삼았고, 입법지침과 모순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등기지침은 입법지침 이외에도 각국의 제도나 판례, 또한 다음과 같은 국제적인 규범이나 원칙들을 참고하여 만들었다.

① 아시아 개발은행의 법과 정책 개혁 - 동산등기에 관한 지침, 아시아 개발은행 (ADB) (2002) 【원문은 Law and Policy Reform at the Asian Development Bank - A Guide to Movables Registries, Asian Development Bank (ADB) (2002)】

② 담보권의 공시: 재산상 부담에 관한 등기 발전을 위한 지도원리, 유럽 재건개발은행 (EBRD) (2004) 【원문은 Publicity of Security Rights: Guiding Principles for the Development of a Charges Registry,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2004)】

③ 담보권의 공시: 재산상 부담에 관한 등기를 위한 표준 정립, 유럽재건개발은행 (EBRD) (2005) 【원문은 Publicity of Security Rights: Setting Standards for Charges Registries, EBRD (2005)】

④ 담보거래에 관한 미주(美洲) 모델법 하의 모델등기규정, 미주기구 (OAS) (2009) 【원문은 Model Registry Regulations under the Model Inter - American Law on Secured Transaction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2009)】

⑤ 유럽사법의 원칙, 정의, 모델규칙, 공통참조기준안 (DCFR), 제6권, 제8편 (동산에 관한 담보권), 제3장 (제3자에 대한 효력), 제3절 (등기) (2010), 유럽민법전에 대한 학습그룹 및 유럽공동체 사법에 대한 연구그룹 (아퀴 그룹) (2010) 【원문은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a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volume 6, book IX (Proprietary security in movable assets), chapter 3 (Effectiveness as Against Third Parties), section 3 (Registration) (2010),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 and the Research Group on EC Private Law (Acquis Group) (2010)】

⑥ 담보거래체제와 담보등기, 국제금융공사 (세계은행 그룹) (2010) 【원문은 Secured Transactions Systems and Colateral Registries,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World Bank Group) (2010)】

⑦ 이동장비에 대한 국제담보권협약 (케이프타운 2001) 및 국제등기를 위한 규칙과 절차, 문서번호 9864,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4th ed. 2010) 【원문은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Cape Town, 2001) and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the International

Registry, document 9864,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4th ed. 2010).

⑧ 담보권 공시하기: 35개 국가에 있어서 등기의 메커니즘 (세계은행/국제금융공사) (2012) 【원문은 Making Security Interests Public: Registration Mechanisms in 35 Jurisdictions (The World Bank/IFC) (2012)

한편 등기지침의 주된 수요자는 다음과 같다.

① 입법지침의 권고사항(특히 등기법제에 관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정책입안자

② 등기제도의 설계내용을 준비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마련할 책임을 가진 기술인력 등을 포함한 등기제도 설계주체

③ 등기소 운영 또는 근무인력

④ 잠재적 담보권자, 신용평가회사,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 담보권설정자의 파산관재인, 그 이외에 담보목적물의 잠재적 매수인을 포함하여 담보권의 영향을 받는 모든 등기제도이용자

⑤ 학자, 판사, 중재인, 변호사 등 법률공동체 구성원

⑥ 유럽재건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BD), 미주간 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등 담보법제 개혁 및 기술지원 관련주체

제 2 절 등기소의 설립과 기능

1. 내 용

(1) 등기소의 목적과 등기관에 임명

동산담보업무를 관장하는 등기소의 목적은 동산담보권에 관한 정보를 수령,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접근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등기관을 임명하여

야 한다. 등기지침에 따르면 등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등기관을 임명할 권한을 가진 주체에 의하여 임명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위 주체는 등기관의 의무를 정하고 등기관이 그 의무를 잘 수행하는지 감독한다.

(2) 등기소의 기능

등기지침은 이 지침을 받아들여 등기 관련 규칙을 제정하게 될 각 나라에 대해서 등기소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도록 권고한다. 등기소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사전에 그 기능을 빠짐없이 확정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렵다. 등기지침 역시 등기소의 기능 제시는 열거적 성격이 아니라 예시적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가급적 그 기능을 망라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등기지침 권고 사항 제3항에서는 그러한 기능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다. 등기소 또는 등기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인력은 이러한 등기소의 기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등기소의 운영과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등기소는 국가기관의 일부로서 설립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민간 분야의 단체와 협력하여 등기소를 설립·운영할 수도 있다. 일단 국가기관으로 설립한 이후 그 중 일상적인 업무운영은 민간 업체에 아웃소싱(outsourcing)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도 국가는 그 민간 업체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등기소의 운영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주체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등기기록 자체와 그 안에 포함된 정보가 가지는 공공성에 비추어 볼 때 등기기록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보유하여야 한다. 등기

소 시설에 대한 소유권 역시 비슷한 이유로 국가가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기소와 관련해서는 등기기록을 저장할 물리적, 가상적 공간 또는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의 공간 또는 용량이 가지는 의미와 모습은 등기기록이 종이 형태와 전자 형태 중 어떤 형태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 형태의 등기기록인 경우에는 최근 눈부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를 저장할 용량 확보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한편 이러한 저장능력의 크기는 등기제도가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의미의 담보거래 이외에도 진정한 리스, 법정담보권, 확정판결에 따른 압류 등에 대한 등기까지 포괄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더욱 커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등기부나 부동산등기부와 연계되는 경우에도 이를 고려하여 저장능력을 정하여야 한다.

원활한 등기소의 운영을 위해서는 등기소를 이용할 사람들이 등기소의 시스템과 친숙하게 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 및 설명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이 등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이에 부합하는 종이 등기양식을 만들거나 모니터 스크린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4) 등기소 이용과 관련된 약관

등기소의 등기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약관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적인 등기시스템을 이용하기 전에 검색이나 비용지급의 편의를 위해 계정을 개설하도록 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약관에 대한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이 약관에서는 등기정보나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안 또는 기밀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이름 또는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의 거래내역을 확인하거나 등기와 검색횟수, 등기와 검색수수료의 액수 등 이용자와 관련된 유용한 통계를 수집하도록 하는 동의를 얻을 수도 있다.

(5) 전자적 또는 종이 형태의 등기 시스템

입법지침은 가능한 한 등기기록을 전자적인 형태로 생성,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전자적 등기기록은 등기기록의 통합과 집중에 매우 효율적인 형태이다.⁶⁾

입법지침은 더 나아가 가능한 한 이용자가 종이 형태로 통지나 검색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또는 다른 네트워킹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통지나 검색 요청을 할 수 있게 등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한다.⁷⁾ 이러한 방식을 취하면 사람이 수동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오는 오류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⁸⁾ 신속한 등기와 검색 절차에도 기여한다. 특히 종이 형태로 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점부터 그 등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일정한 시간적 간극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전자적 형태를 취하면 이러한 간극이 최소화되어 이로 인한 혼란 역시 최소화된다. 그 이외에도 전자적 형태의 등기 시스템은 등기소 운영의 비용을 줄이고, 등기소 근무자들이 기망적 행동 또는 부패한 행동을 할 위험을 줄여주며, 이들이 수동으로 등기기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한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줄

6) Secured Transaction Guide, chap. IV, paras. 21-24. and rec. 54, subpara. (e).

7) Secured Transaction Guide, chap. IV, paras. 23-26. and 43 and rec. 54. subpara. (j) (ii).

8) Secured Transaction Guide, chap. IV, paras. 23-26. and 43 and rec. 54. subpara. (j) (iii)-(iv).

여주고, 등기소의 일상적인 운영시간 이외에도 등기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을 가진다.

전자적 형태의 등기시스템 아래에서는 그 시스템 이용자들은 등기소 또는 기타 공공장소에 설치된 컴퓨터 시설은 물론이고 그들의 개인적인 컴퓨터 시설을 통해서도 등기와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들이 제3의 민간 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등기와 검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기록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정보의 유실, 기술적 오류 또는 보안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선택되어야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의사소통, 이용자 계정, 수수료 지급 및 재정 계좌, 통계의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다른 정부의 등기 또는 등록 시스템과 연계하여 그 자리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권고사항

권고사항 제1항 (등기소의 설립)

등기규칙⁹⁾은 등기소가 동산담보권에 관하여 등기된 통지의 정보를 수령, 저장하고 일반인에게 접근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2항 (등기관의 임명)

등기규칙은 당해 국가 또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승인된 자가 등기관을 임명하고, 그의 의무를 정하며, 그의 임무수행을 감독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9) 여기에서의 등기규칙(regulation)은 법률의 하위 규범을 포괄적으로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 법적 성격은 각국의 법제적 특성이나 입법적 결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가장 가까운 성격의 규범이라고 생각된다.

권고사항 제3항 (등기소의 기능)

등기규칙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등기소의 기능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권고사항 제4, 6, 7, 9항에 따라 등기소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접근거절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

(b) 권고사항 제5항에 따라 등기소의 서비스에 접근할 방법 및 등기소 사무실의 업무시간을 공시하는 것

(c) 권고사항 제8, 10항에 따라 통지의 등기거절 또는 검색요청거절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

(d) 권고사항 제1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통지에 있는 정보를 등기기록에 입력하고, 각 등기의 일시를 기록하며, 권고사항 제12조에 따라 최초 통지에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것

(e) 권고사항 제16항에 따라 등기기록 안의 정보를 정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직하여 검색가능하게 하는 것

(f) 권고사항 제17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정보의 진실성을 보호하는 것

(g) 권고사항 제18항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

(h) 권고사항 제19항에 따라 수정통지에 있는 정보를 등기기록에 입력하는 것

(i) 권고사항 제20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취소통지의 등기에 기하여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등기된 통지에 있는 정보를 제거하는 것

(j) 권고사항 제21항에 따라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제거된 정보를 보관하는 것

제 3 절 등기서비스에 대한 접근

1. 내 용

(1) 공중의 접근

입법지침은 누구든지 현재 또는 장래의 담보권에 관한 통지를 등기하거나 공공 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는 동산담보제도의 확실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입법지침의 핵심적인 목표와 연관되는 내용이다.¹⁰⁾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이 원칙은 등기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등기 시스템이 이용자들이 하여금 등기소 인력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도 전자적으로 통지를 제출하거나 검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공중의 접근가능성이 극대화된다. 이 점에서 종이 형태의 등기는 비용을 높이고 절차를 지연시키며 등기소의 잠재적인 오류와 이에 따른 책임 문제를 수반한다.

(2) 등기소의 운영일시

입법지침에서는 등기소가 물리적 사무실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지, 아니면 이용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지에 따라 등기소의 운영일시에 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다.

물리적 사무실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용자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일정한 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업무시간이 등기소의 경우에도 적용될 것이다. 특히 등기소는 당일 접수된 등기신청은 당일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등기소는 당일 처리를 전제로 한 신청시간을 정

10) Secured Transaction Guide, chap. IV, paras. 25, and rec. 1, subpara. (f).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기규칙 또는 등기 관련 행정지침에서는 등기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려 있더라도 당일 처리를 위해서 업무종료시간보다 이른 시간(예를 들어 오후 4시)까지 등기신청을 접수시키도록 규정할 수 있다. 또는 오후 5시까지 계속하여 등기신청을 접수하더라도 일정한 시간대 이후에 접수된 등기신청은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업무일에 처리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그 이외에도 날짜와 무관하게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몇 시간 내에 등기기록에 입력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다.

전자적 방식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등기소는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람들이 등기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과 등기기록에의 입력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물리적 사무실을 통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3) 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입법지침은 등기소는 ① 승인된 방식과 매체에 따라 제출되고(무엇이 승인된 방식과 매체인지는 등기 서비스가 종이 형태와 전자적 형태 중 어떤 형태에 쫓아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짐), ② 승인된 수수료가 지급되며, ③ 담보설정자의 식별자(identifier)를 제공하고 그 이외에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등기의 최초 통지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¹¹⁾ 또한 입법지침은 등기신청인의 신원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고 보관하도록 권고한다.¹²⁾ 이러한 신원에 관한 증명은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받

11) Secured Transaction Guide, rec. 54, subpara. (c); A/CN.9/WG.IV/WP.54/Add. 2, paras. 53 and 54.

12) Secured Transaction Guide, rec. 55, subpara. (b).

아들여지는 방법(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또는 그 이외에 국가가 발급한 공식문서)으로 하면 충분하다. 또한 반복하여 등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을 위해 처음에 신원을 증명하여 이용계정을 개설한 뒤 그 이후에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기만 하면 매번 신원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등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입법지침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등기지침에서는 누구든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위해 통지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i) 등기소가 규정한 양식의 사용
- (ii) 등기소가 규정한 방식에 따른 신원 제공
- (iii) 등기소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의 지급 또는 등기소가 인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지급약정

한편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등기소는 이용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등기소가 규정한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신원 제공을 위해 제시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수수료 지급을 위해 제시한 신용카드의 한도액이 초과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라는 표현이 담는 의미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는 접근거절과 거의 동시를 의미한다. 만약 종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몇 시간 등 합리적인 시간 내를 의미한다.

그 이외에도 일단 등기소가 규정한 양식을 사용하긴 하였지만 그 양식 내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기입하지 않았거나 알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기입한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등기지침은 권고사항 제23조, 제30조, 제32조에서 이 점을 규정하고 있다.

(4) 신원의 진실성 확인, 승인에 관한 증거 또는 통지내용의 조사가 요구되지 않음

이미 설명하였듯이 입법지침은 등기신청인의 신원에 관한 기록을 요구하고 보관하도록 권고한다.¹³⁾ 그러나 그 신원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면 등기신청절차는 지연될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지침은 등기소가 위와 같은 신원정보의 진실성을 확인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¹⁴⁾ 한편 등기가 유효하려면 담보권설정자의 서면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등기과정에서 이러한 승인이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등기 후에 승인을 받아도 충분하다.¹⁵⁾

또한 등기소는 통지내용 자체를 조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제출하는 통지가 늘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지내용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등기소가 통지내용의 정확성을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지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등기신청인이 부담한다. 만약 등기소가 통지내용의 정확성을 조사하여 그것이 법률상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면 등기절차가 지연되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오류에 대한 책임까지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입법지침이 상정하는 등기제도의 모습이 아니다. 결국 등기신청의 프로세스에서 당사자의 역할을 최대화하고 등기소의 역할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5)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접근

검색 서비스는 가능한 한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 일부 국가들은 프라이버시의 문제 때문에 제3자가 등기기록에 접속하여 검색하고자

13) Secured Transaction Guide, chap. IV, para. 48, and rec. 55, subpara. (b).

14) Secured Transaction Guide, rec. 54, subpara (d).

15) Secured Transaction Guide, chap. IV, para. 106, and rec. 71.

할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입법 지침은 이러한 태도를 권장하지 않는다. 검색은 가급적 넓게 허용하 되, 프라이버시 문제는 담보권자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representative) 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등기기록 자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담도록 함으로써 해결하여야 한다.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앞서 살펴 본 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 과 유사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검색하고자 하는 자는 ① 등기소가 규 정한 양식을 사용하고, ② 등기소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의 지급 또는 등기소가 인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지급약정을 하기만 하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경우 등기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서비스의 경우와는 달리 등기소는 검색신청인의 신원에 관한 기 록을 요구하고 보관할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소는 만약 검색 요청이 그 검색 기준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다. 이 경우에도 가능 한 한 신속하게 거절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가 가지는 의미는 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과 같다.

2. 권고사항

권고사항 제4항 (공중의 접근)

등기규칙은 권고사항 제6항, 제9항에 따라 누구든지 등기소에 통지 또는 검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5항 (운영일시)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만약 등기소의 서비스가 물리적 사무실을 통하여 제공된다면,

- (i) 각 등기소 사무실은 [각국이 정하는 일시에] 공중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 (ii) 등기소 사무실의 위치와 그 운영일시에 관한 정보가 등기소의 웹사이트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방법으로 널리 공시되어야 하고, 각 사무실에 그 운영일시가 게시되어야 한다.
- (b) 만약 등기소의 서비스가 전자적인 통신수단을 통하여 제공된다면, 전자적 접근은 언제나 가능하여야 한다.
- (c) 이 항의 (a), (b)항에도 불구하고,
- (i) 등기소는 등기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동안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 (ii) 이 경우 가능하다면 사전에 그 서비스 차단과 예상 차단기간이 등기소의 웹사이트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방법으로 널리 공시되어야 하고, 사전 공시가 불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공시가 가능해지자마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소의 서비스가 물리적 사무실을 통하여 제공된다면 그 공고가 각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한다.

권고사항 제6항 (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누구든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위해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
- (i) 등기소가 규정한 양식의 사용
 - (ii) 등기소가 규정한 방식에 따른 신원 제공
 - (iii) 등기소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의 지급 또는 등기소가 인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지급약정
- (b) 만약 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경우 등기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7항 (신원의 진실성 확인, 승인에 관한 증거 또는 통지 내용의 조사가 요구되지 않음)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등기소는 등기자의 신원정보를 보유하지만 그 신원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은 요구하지 않는다.
- (b) 등기소는 통지등기의 승인 존재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 (c) 등기소는 통지내용의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특히 소정의 칸에 입력된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법적 충분성 확보는 등기소의 책임이 아니다.

권고사항 제8항 (통지의 등기거절)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등기소는 만약 요구되는 모든 칸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거나 입력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등기를 거절한다.
- (b) 등기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절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9항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누구든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검색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 (i) 등기소가 규정한 양식의 사용
 - (ii) 등기소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의 지급 또는 등기소가 인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지급약정
- (b) 만약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경우 등기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10항 (검색 서비스의 거절)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등기소는 만약 검색 요청이 그 검색의 기준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다.

(b) 등기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절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절 등기제도의 기초

1. 내 용

(1) 통지의 등기효력 발생시점

입법지침은 최초 통지 또는 수정통지의 등기는 그 통지 안의 정보가 등기소에 의해 접수될 때가 아니라 접수 이후 등기기록에 입력되어 검색가능하게 될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¹⁶⁾ 통상 이러한 내용은 각국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법률이 아닌 규칙 차원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이건 이러한 통지의 등기 효력 발생시점은 등기기록 자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입법지침은 최초 통지나 수정통지와는 달리 말소통지의 등기 효력 발생시점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다만 입법지침에서는 말소통지가 접수되면 즉시 그 말소에 관련된 통지 내의 정보를 공공등기 기록으로부터 제거하여 더 이상 일반인이 검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별도로 저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¹⁷⁾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련된 통지 내의 정보가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제거되어 일반인이 검색불가능하게 된 때에 말소통지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16) Secured Transaction Guide, chap. IV, para. 102-105, and rec. 70.

17) Secured Transaction Guide, rec. 74.

등기제도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통지가 접수되면 곧바로 그 통지 내의 정보가 검색가능해지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운영된다면 통지접수시점과 그 통지에 따른 등기효력발생시점 사이의 간격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등기신청인은 자신의 통지가 언제 등기기록상 효력을 발생할 것인지에 따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기제도가 전산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접수시점과 등기효력발생시점 사이의 간격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 이때 등기소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접수와 종이 형태의 접수가 모두 가능한 시스템 아래에서는 종이 형태의 접수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전산접수에 따른 등기가 먼저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최초 통지가 접수되면 등기소는 이에 대해 특정한 등기번호를 부여하여 그 이후 그 최초 통지와 관련된 수정통지 또는 말소통지가 접수, 등기되는 경우에도 그 최초 통지의 등기번호와 이를 연동시켜 단일한 등기번호로 모든 관련 등기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¹⁸⁾

(2) 통지의 등기 유효기간

입법지침은 등기 유효기간에 대해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였다.¹⁹⁾

선택지 A에서는 획일적인 등기 유효기간을 제시한다. 만약 그 유효기간을 넘어서서 등기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등기를 갱신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지는 확실성을 가지지만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유연성은 보장해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 유효기간이 별도로 등기기록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A/CN.9/WG.VI/WP.54/Add. 4, paras. 4 and 24.

19) Secured Transaction Guide, chap. IV, para. 87-91, and rec. 69.

선택지 B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기간의 길이를 정할 수 있다. 등기를 갱신할 때에도 그 갱신된 등기의 유효기간의 길이를 정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등기수수료 역시 유효기간의 길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 유효기간은 등기기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등기지침에서도 이러한 선택지들을 받아들였다. 그 이외에도 선택지 C로서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기간의 길이를 정하되 법률에서 최장기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선택지 A와 선택지 B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선택지를 채택하건 그 유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담보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간계산에 대한 각국의 일반적인 법률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상실한다. 물론 그 이전에 유효기간이 갱신되거나 기타 방법으로 등기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일단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 그 등기의 유효기간은 종전 등기와 무관하게 새로운 등기시점부터 기산한다.

(3) 통지가 등기될 수 있는 시점

입법지침은 담보권의 발생 또는 담보계약의 체결 전에 통지를 등기하는 것을 일단 허용한다. 이는 선등기(advance registration)라고 표현한다.²⁰⁾ 이는 최초 통지나 수정통지의 등기에는 적용되지만 말소통지의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말소통지의 등기는 말소의 합의 그 밖의 말소원인의 존재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한다.

등기는 담보권의 발생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담보계약이 체결되고 담보권의 발생에 필요한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면 담보권이 발생하게

20)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98-101 and rec. 67.

된다. 다만 담보권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우선권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다.²¹⁾

만일 등기가 먼저 이루어졌으나 담보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만약 담보권자가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면 담보설정자가 간이한 사법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말소를 강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²²⁾

(4) 단일한 통지의 충분성

입법지침이 상정하는 통지등기제도 아래에서는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복수의 담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담보권을 단일한 통지로 등기할 수 있는 길이 허용되어야 한다. 만약 각각의 담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각각의 담보권에 대해서 모두 별도의 통지를 요구한다면 이는 무의미한 비용을 강요할 뿐이다. 입법지침에서는 단일한 통지로 이러한 복수의 담보권을 한꺼번에 등기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²³⁾ 다만 이는 복수의 담보권이 등기기록에 기술된 당해 자산 위에 설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타당하다. 만약 담보자산이 다르다면 별도의 통지가 필요하다.

(5) 등기된 통지에 관하여 담보설정자를 기준으로 한 정보정렬과 검색

부동산등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특정하는 문자나 숫자 또는 기타 특정수단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정렬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 등 부동산에 준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항공기에 관한 케이프타운 협약에서는 항공기 제조사가 부여한 일련번호를 정보정렬과 검

21) A/CN.9/WG.VI/WP.54, para. 33.

22)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72, subparas. (b) and (c); A/CN.9/WG.VI/WP.52/Add. 4, paras. 38-41.

23)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68.

색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접근방법과 달리 입법지침은 담보설정자(grantor)를 동산담보에 대한 정보정렬과 검색의 1차적 기준으로 삼는다.²⁴⁾ 이러한 입법지침의 태도는 다음 두 가지 근거에 기초한다. 첫째, 대부분의 동산은 각 동산별로 정보를 정렬하거나 검색하기에 충분한 특정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둘째, 담보설정자를 기준으로 하는 정보정렬과 검색은 복수의 자산이나 재고, 장래 취득할 물건에 대해 하나의 등기로 담보를 설정하여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취득하도록 해 준다.²⁵⁾

(6) 등기된 통지에 관하여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한 정보정렬과 검색

담보설정자를 기준으로 한 정렬과 검색을 하게 되면 특정한 거래상황에서는 “A-B-C-D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예컨대 B가 A를 위해 자동차에 담보권을 설정해 준 뒤 그 자동차를 C에게 양도하였고, C가 다시 D에게 자동차를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려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C가 본래의 담보설정자인 B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하였다는 점을 D가 모른다고 가정하면, D는 자동차에 관한 거래를 하기 전에 C가 담보설정자로 되어 있는 담보권이 있는지 여부를 등기부를 통해 검색하게 될 것이다. A가 C를 담보설정자에 추가하는 수정등기를 하거나 새로운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D는 B의 담보설정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B가 가지는 부담은 추급효로 인하여 최종 양수인인 D에게도 미치게 된다.²⁶⁾

이러한 “A-B-C-D 문제”에 대응하여 어떤 나라들은 자산을 기준으로 한 정보정렬과 검색기준을 보충적으로 채용한다. 물론 이러한 기준은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등 자산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입법지침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에

24)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31-36 and rec. 54 subpara. (h).

25)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68.

26)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s. 79 and 81.

대해 논의하고 있긴 하나 이와 관련한 특정한 권고사항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7) 등기기록의 진실성과 안전성 보존

입법지침에서는 일상적인 등기업무를 사적 업체에 맡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등기업무를 감독할 책임과 등기기록에 대한 소유권을 지니고,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 관련 시설에 대한 소유권도 보유하여야 한다고 한다.²⁷⁾ 등기기록의 진실성과 안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또다른 조치로서 ① 등기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요청하고 보유할 등기소의 의무,²⁸⁾ ② 담보권자에게 신속하게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보낼 등기소의 의무, ③ 담보설정자에게 신속하게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보낼 담보권자의 의무, ④ 등기소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거절에 관하여 등기소 직원들의 재량을 제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등기기록의 진실성과 안전성 보존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등기소 직원은 법이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된 등기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다만 종이 형태의 등기제도가 적용되는 곳이라면 담보권자가 제출한 정보를 종이 형태의 등기부에 옮기는 과정에서 등기소 직원이 실수를 한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한 정정사실은 담보권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면 등기소는 담보권자에게 이를 알리고, 담보권자가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수정통지를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27) A/CN.9/WG.VI/WP.54/Add. 1, para. 38.

28) A/CN.9/WG.VI/WP.54/Add. 1, paras. 56 and 57.

둘째, 등기기록의 물리적인 훼손을 막기 위해 각국은 등기기록에 대한 복제본(back-up copies)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담보권자가 입력한 등기일시 또는 그 밖의 정보를 등기소 직원이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등기 시스템을 설계하고, 담보권자가 현금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수수료의 취급과 관련하여 등기소 직원을 엄격히 감독하며, 말소통지의 사본을 통해 본래 제출되었던 정보를 보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등기소 직원들의 부패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등기소 직원들이 담보나 등기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및 검색에 필요한 실무적인 조언은 줄 수 있다.

다섯째, 등기소 직원들을 통하기보다는 담보권자나 검색자가 직접 등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등기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등기 시스템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²⁹⁾ 이를 통해 등기소 직원들이 등기과정에 관여하면서 저지르는 실수나 부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8) 등기소의 법적 책임

입법지침은 담보법에서 등기와 검색 시스템의 관리 또는 운영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손해에 관한 법적 책임의 배분에 대해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등기지침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등기정보를 입력하거나 검색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³⁰⁾ 다만 시스템 자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국가에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 한편 등기가 종이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입력과정이나 검

29)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54 subpara. (j).

30) A/CN.9/WG.VI/WP.54/Add. 1, para. 61.

색요청 수행과정에서 등기소의 잘못이 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등기소 직원이 잘못된 조언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러한 등기소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등기수수료 또는 검색수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보상기금을 조성한 뒤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등기소의 일반적인 예산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나라도 있다.

(9) 담보권자에게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보낼 등기관 의무

통지등기는 그 통지 안에 담긴 정보가 등기기록에 입력되어 검색자들에게 검색이 가능하게 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입법지침은 등기기록 입력 후 즉시 담보권자가 등기에 관한 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수정에 관하여 통지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³¹⁾ 따라서 각국에서는 등기소가 이러한 취지에 따라 통지된 등기의 사본을 담보권자에게 보내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 등기사본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부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신속하게 등기의 효력발생시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등기와 동시에 담보권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전자적 사본을 보낼 수 있도록 등기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담보권자는 수정 또는 말소통지등기의 사본을 송부받아 혹시 그러한 등기가 오류인 경우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담보설정자에게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보낼 담보권자의 의무

담보권자는 등기를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담보설정자의 서면승인(written author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31)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49-52 and rec. 55, subparas (d) and (e).

입법지침은 담보권자가 담보설정자에게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보내도록 하고 있다.³²⁾ 만약 여러 명의 담보권자가 있다면 그 중 한 명이 담보설정자에게 사본을 보내면 충분하다. 이처럼 등기소가 아니라 담보권자에게 사본을 보내도록 하는 것은 등기소의 부담을 경감하여 등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11) 공공등기기록 내 정보의 수정

입법지침은 담보권자가 언제라도 수정통지를 등기함으로써 통지 내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³⁾ 또한 입법지침은 일정한 상황 아래에서는 담보설정자가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수정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³⁴⁾ 각국에서는 이러한 수정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가 무엇인지를 법령에서 정할 수 있다.

(12)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정보제거 및 저장

입법지침은 통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말소통지가 등기되면 등기된 통지에 포함된 정보가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신속하게 제거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이후 그 제거된 정보는 필요한 경우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저장되어야 한다.³⁵⁾

만약 말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통지가 일반인에게 검색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으면 이는 제3의 검색자 입장에서 법적 불명확성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통지는 즉시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한편 이처럼 제거된 정보를 별도로 저장

32)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55, subpara. (c).

33)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110-116, and rec. 73.

34)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107 and 108, and rec. 72.

35)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말소통지가 등기된 통지의 저장에 관해서는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 109, and rec. 74 참조. 담보권자의 승인 없이 말소된 통지의 저장에 관해서는 A/CN.9/WG.VI/WP.54/Add. 4, paras. 28-37 참조.

하는 이유는 향후 권리자들의 우선순위나 권리범위 등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등기시점이나 담보자산의 범위 등에 관한 정보를 복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국의 등기규칙은 이처럼 별도로 저장된 정보가 보존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간(예컨대 20년)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간은 각국의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의 기간과 관련성을 가지고 결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담보권과 관련하여 당해 국가의 법률이 담보권 또는 담보계약의 해소 15년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면 보존기간 역시 이를 염두에 두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멸시효 기간 등이 연장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열려 있는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3) 통지와 검색요청의 언어

입법지침은 등기정보의 입력이나 등기소에 대한 검색요청에서 사용될 언어에 관하여 특정한 권고사항을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 부분에서는 각국의 등기규칙에서 이 점을 다룰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⁶⁾

통상적으로 이 경우 사용되어야 할 언어는 각국의 공식 언어일 것이다. 물론 각국에서는 그 언어 이외에도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를 등기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언어가 일반적인 검색자들에게 잘 이해되지 못하는 언어라면 그 언어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등기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담보설정자나 담보권자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외국언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 법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에는 외국언어를 그대로 사용할지, 또는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6)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44-46.

만약 법인의 명칭에 대해 여러 개의 공식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 각각의 언어에 따른 명칭을 별개로 기재하게 하거나 그 중 하나의 언어에 따른 명칭만 기재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이건 검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한다.

2. 권고사항

권고사항 제11항 (통지의 등기효력 발생시점)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최초 통지 또는 수정통지의 등기는 통지 정보가 등기기록에 입력되어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가능하게 된 일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b) 등기소는 통지 정보가 등기기록에 입력되어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가능하게 된 일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c) 등기소는 최초 통지 또는 수정통지의 정보를 등기기록에 입력하거나 정렬(index)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정리(organize)하여 가능한 신속하게 최초 통지 또는 수정통지가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d) 말소통지의 등기는 이전에 등기된 관련 통지가 더 이상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가능하게 되지 않은 일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 등기소는 이전에 등기된 관련 통지가 더 이상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가능하게 되지 않은 일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권고사항 제12항 (통지의 등기 유효기간)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선택지 A

- (a) 최초 통지의 등기는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짧은 기간 - 예컨대 5년 - 동안] 유효하다.
- (b) 등기의 유효기간은 그 만료 전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짧은 기간 - 예컨대 6개월 - 동안] 연장될 수 있다.
- (c)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수정통지의 등기는 현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로부터 [(a)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선택지 B

- (a) 최초 통지의 등기는 그 통지의 해당 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
- (b) 유효기간은 해당 란에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재한 수정통지의 등기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전 언제라도 연장될 수 있다.
- (c)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수정통지의 등기는 현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로부터 등기신청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선택지 C

- (a) 최초 통지의 등기는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긴 기간 - 가령 20년]의 범위 내에서 등기신청인이 그 통지의 해당 란에 기재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
- (b) 등기의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 만료 전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짧은 기간] 내에 해당란에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재한 수정통지의 등기에 의하여 [(a)항에서 정하는 최장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
- (c)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수정통지의 등기는 현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로부터 등기신청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권고사항 제13항 (통지가 등기될 수 있는 시점)

등기규칙은 담보권의 성립 또는 담보설정계약의 체결 이전이나 이후 언제라도 등기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14항 (단일한 통지의 충분성)

등기규칙은 단일한 통지의 등기만으로 그 통지에 기술된 담보자산에 관하여 동일한 담보권자를 위해 담보설정자가 제공한 하나 또는 복수의 담보권에 대하여, 그 담보권이 등기 시점에 존재하였건 혹은 그 이후에 성립되었건, 또한 같은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담보설정약정으로 부터 발생하였건 혹은 복수의 담보설정약정으로부터 발생하였건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15항 (등기번호)

권고사항 16, 18, 30, 32, 34항의 목적을 위해 등기규칙은 등기소가 최초의 통지에 특정한 등기번호를 부여하고 그 등기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통지들을 그 최초 통지와 연관시킨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16항 (등기기록 안의 정보정렬 또는 정리)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등기소는 공공 등기기록에 있는 최초 통지 또는 수정통지의 정보를 정렬(index)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정리(organize)하여 권고사항 제34항에 따라 그 정보가 같은 등기번호를 가지는 모든 통지들과 함께 검색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등기소는 등기기록 저장소(archive)에 있는 말소통지의 정보를 정렬(index)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정리(organize)하여 권고사항 제21항에 따라 그 정보가 같은 등기번호를 가지는 모든 통지들과 함께 검색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17항 (등기기록의 진실성)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권고사항 제19, 20항에 규정된 이외에는 등기소는 등기기록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

(b) 등기소는 등기기록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등기기록의 재편성을 위한 백업 장치(back-up mechanisms)를 제공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18항 (등기된 통지의 사본)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등기소는 통지의 등기효력발생시점과 등기번호를 기재한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지에 기재된 각 담보권자의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b) 이 권고사항 (a)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받은 때로부터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정한 단기의 기간 - 가령 10 일] 이내에 담보권자는 (i) 최초 통지의 사본을 통지에 담보설정자로 기재된 자의 주소로 발송하고, (ii) 수정통지 또는 말소통지의 사본을 통지에 기재된 담보설정자에게 등기기록에 기재된 가장 최근의 주소로 발송하거나,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담보권자가 통지에 기재된 담보설정자의 주소변경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재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

(c)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자가 통지에 담보설정자로 기재된 자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자는 알려진 가장 최근의 주소 또는 (공공등기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같이) 그에게 합리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d) 이 권고사항 (c)항의 규칙은 통지에 담보설정자로 기재된 자가

다수의 주소를 가지거나 등기소가 소재한 국가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권고사항 제19항 (공공등기기록에 있는 정보의 수정)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등기된 통지 내의 정보는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자가 권고사항 제30, 31 또는 33항에 따라 수정통지를 등기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

(b) 수정통지의 등기는 그 수정통지가 관련되어 있는 통지등기 내 정보의 삭제 또는 수정을 초래하지 않는다.

권고사항 제20항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정보 제거)

등기규칙은 권고사항 제1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권고사항 제32 또는 33항에 따라 말소통지가 등기됨으로써 등기된 통지 안의 정보가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제거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21항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제거된 정보의 저장)

등기규칙은 권고사항 제20항에 따라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제거된 정보는 최소한 [예컨대 20년과 같이 각국에 의하여 규정된 장기간 동안] 권고사항 제16항 (b)항에 따라 등기소에 의하여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따라 정보가 저장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22항 (통지의 언어)

등기규칙은 통지 안의 정보는 [각국이 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 에 의하여 등기소가 결정하여 공개한 문자 모음 내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 5 절 최초 통지의 등기

1. 개 관

입법지침은 최초 통지에 ① 담보설정자의 식별자(identifier)와 주소, ② 담보권자 또는 그 대표자의 식별자와 주소, ③ 담보자산에 관한 기술(description), ④ 등기의 유효기간(만약 당해 국가가 등기신청인으로 하여금 유효기간을 선택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⑤ 채권최고액(만약 당해 국가가 이를 필수적인 등기정보로 요구하는 경우)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³⁷⁾

이러한 각각의 정보는 양식의 지정된 해당란에 입력되어야 한다.³⁸⁾ 만약 담보권자 해당란에 담보설정자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등기소가 그러한 이유만으로 등기접수를 거절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범위 내에서는 등기신청인이 의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2. 담보설정자에 관한 정보

입법지침은 검색자가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를 검색기준으로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등기된 통지를 정렬하고 조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³⁹⁾

한편 담보설정자가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는 없다. 물상보증인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입력하여야 할 정보는 채무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에 관한 정보이다. 만약 담보설정자가 복수라면 각각의 담보설정자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입력되어야 한다. 그리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이는 하나의 양식에 한꺼번에 입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담

37)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65-97, and rec. 57.

38) A/CN.9/WG.VI/WP.54/Add. 1, para. 57.

39)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58-60.

보설정자에 대해서만 검색하면 등기된 통지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⁴⁰⁾

입법지침은 담보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에 관하여 각각 별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⁴¹⁾

자연인의 식별자는 특정한 공식 문서에 나타난 그의 이름이다.⁴²⁾ 따라서 등기규칙에서는 그 공식문서가 무엇인지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느 나라에서 출생하였다면 그 나라의 출생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식문서, 그 나라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권 또는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명서, 귀화한 경우에는 국적 관련 문서나 여권, 외국인이라면 외국의 여권, 출생증명서 그 밖의 신분증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동명이인의 경우에는 담보설정자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여러 개의 검색결과가 도출된다. 이에 따라 입법지침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름 이외에도 생년월일이나 신분증명서의 번호 등 다른 식별자들을 추가하도록 한다.⁴³⁾ 다만 이 경우에도 검색시 식별자는 담보설정자의 이름이다.

법인의 식별자는 법인설립문서에 나타난 명칭이다.⁴⁴⁾ 법인설립문서는 계약서일 수도 있고 법령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등기부를 가지고 있고, 법인등기부에는 법인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각각의 법인에 특유한 번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시 법인의 명칭 이외에 이러한 법인등록번호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할 수 있다. 한편 법인의 명칭에는 “Ltd”, “Inc”, “Incorp”, “Corp”, “Co” 등의 용어가 부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용어를 잘못 사용하였다고 하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40) A/CN.9/WG.VI/WP.54/Add. 3, paras. 20-23.

41)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59-60.

42)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59.

43)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59.

44)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60.

한편 담보설정자가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경우에 무엇이 식별자가 되는가에 대해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파산자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칭이 식별자가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리에 따르면 담보설정자는 담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등기지침의 주석에서 예로 들고 있는 파산의 경우에도 담보설정자는 여전히 자연인이나 법인에 해당하는 파산자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관리처분권을 대신 행사할 뿐이다. 또한 신탁의 경우에도 일부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재산 자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이 담보설정자가 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입법지침에 따르면 담보설정자의 주소는 통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다.⁴⁵⁾ 여기에서의 주소는 물리적 주소뿐만 아니라 이메일 주소와 같은 전자적 주소도 포함한다. 담보설정자의 주소는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에 생년월일이나 개인의 식별번호 등과 함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담보권자는 통지된 등기의 사본을 담보설정자에게 보내야 하므로 이때 담보설정자의 주소가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담보설정자의 주소 역시 식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법지침에서는 담보설정자의 이름만 식별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설정자의 주소로 담보권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는 없다.

3. 담보권자에 관한 정보

입법지침은 담보권자나 그 대표자의 식별자가 등기소에 접수되는 통지에 포함될 것을 요구한다.⁴⁶⁾ 담보설정자와 마찬가지로 담보권자

45)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57, subpara. (a).

46)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57, subpara. (a).

의 식별자 역시 담보권자나 그 대표자의 이름이다. 등기될 수 있는 이름을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자(자연인, 법인, 또는 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의 이름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담보권자 이외에 그 대표자(representative)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담보권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담보설정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담보설정계약을 통해 담보권자의 신원을 알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대표자의 이름이 등기기록에 올라가는 것은 큰 상관이 없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담보권의 존재와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담보권자와 소통할 일이 있다면 대표자와 하면 되므로 별 문제가 없다. 담보권자가 자신의 이름 대신 대표자의 이름을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대표자에게 자신을 위하여 행위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단지 담보등기를 대행하는 서비스업체의 경우에는 그 이름이 대표자로서 등기기록에 기재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⁴⁷⁾

한편 담보권자나 그 대표자의 식별자는 정보의 정렬 또는 검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⁴⁸⁾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담보설정자의 식별자에 대한 설명이 담보권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를 보완하기 위해 생년월일이나 개인식별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부분은 담보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차피 담보권자의 식별자로 검색을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4. 담보자산에 대한 기술

입법지침은 담보권의 대상이 되는 담보자산에 관한 기술(description)은 등기의 유효요건 중 하나라고 한다.⁴⁹⁾ 이를 통해 제3자는 어느 자

47) A/CN.9/WG.VI/WP.54, para. 14.

48) A/CN.9/WG.VI/WP.54/Add. 2, paras. 21-23, and A/CN.9/WG.VI/WP.54/Add. 4, paras. 42-45.

49)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57 subpara. (b).

산까지가 이미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입법지침은 담보자산을 합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담보설정계약과 담보등기의 유효성을 충족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한다.⁵⁰⁾ 다만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담보자산이 합리적으로 특정되는 것인지는 그 자산의 속성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담보자산이 담보설정자가 소유하는 많은 그림 중 하나라면, 통지에 포함될 기술(description)은 그 그림의 이름과 화가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화랑에 있는 모든 재고가 담보자산이라면 예컨대 “담보설정자가 소유하는 모든 그림”, “담보설정자가 제작한 모든 그림”, 또는 “담보설정자의 모든 재고” 등 훨씬 일반적인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다. 또한 이처럼 불특정 다수의 자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기술하였다면 이는 그 이후 그 범주 안에 포함될 장래의 자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떤 국가들은 가치가 높은 특정한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로 그 자산을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지침은 이러한 특정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특정한 유형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담보자산을 기술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등기신청인이 일련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처럼 일련번호에 따른 담보자산의 특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일련번호만으로 검색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하는 검색은 담보설정자를 기준으로 하는 검색에 부가하여 제공될 서비스일 뿐이다.

50)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14 subpara. (d) and 63.

5. 기 타

(1) 유효기간

입법지침에서는 등기신청인이 스스로 통지등기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지도 허용하고 있다. 만약 어떤 국가가 그러한 선택지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도 통지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유효기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등기가 무효화되는가? 입법지침은 설령 그 유효기간 입력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통지등기를 신뢰하는 제3자를 심각하게 오도하지 않는 이상 등기 자체를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고 한다.⁵¹⁾ 어떤 경우가 “제3자를 심각하게 오도”하는 상황인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제3자가 등기에 신뢰를 투여하였고 그 신뢰가 배반되면 권리나 이익이 해쳐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2)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국가에 관하여 입법지침에서는 채권최고액 입력에 관하여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지등기를 신뢰하는 제3자를 심각하게 오도하지 않는 이상 등기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다고 한다.⁵²⁾ 이 경우 “심각하게 오도”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3자가 부담한다. 제3자가 그 입증에 성공하지 못하면 등기가 무효화되지 않는다.

만약 통지에 기재된 최고액이 실제 담보설정계약에서 합의된 최고액보다 높다면 그 이후 당해 담보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제3자는 그 담보설정에 따른 손해는 입지 않는다. 한편 담보설정자로

51)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66.

52)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66.

서는 이 경우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잘못 기재된 채권최고액을 바로잡을 수 있으므로 손해를 입지 않는다.

반면 통지에 기재된 최고액이 실제 담보설정계약에서 합의된 최고액보다 낮다면 그 이후 당해 담보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제3자는 나중에 그 최고액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그 차액만큼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이는 담보자산의 잔여가치를 믿고 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경우 제3자나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는 잘못된 최고액으로 대항할 수 없다.

어느 경우이건 담보권자는 실제 최고액 이상으로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6. 권고사항

권고사항 제23항 (최초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최초 통지는 해당 란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 (i) 권고사항 제24 내지 26항에 따라 결정되는 담보설정자의 식별자, 담보권자의 주소 [그리고 담보설정자를 특정하여 식별하기 위해 그 이외에 각국에 의하여 규정되는 다른 정보]
- (ii) 권고사항 제27항에 따라 결정되는 담보권자의 식별자, 그리고 담보권자의 주소
- (iii) 권고사항 제28항에 따른 담보자산의 기술
- (iv) 권고사항 제13항에 따른 등기의 유효기간
- (v)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는 최고액]

(b) 둘 이상의 담보설정자 또는 담보권자가 있는 때에는 입력이 요구되는 정보는 해당란에 각각의 담보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해 별도로 입력되어야 한다.

권고사항 제24항 (담보설정자의 식별자(자연인))

등기규칙은 담보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는 담보설정자의 이름이다.
- (b) [각국은 담보설정자의 이름의 다양한 요소와 각 요소를 위한 해당란을 특정하여야 한다.]
- (c) [각국은 담보설정자의 이름을 결정할 공식적인 서류들과 그 서류들 간의 우선순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 (d) [각국은 공식서류의 발급 이후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담보설정자의 이름을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25항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법인))

등기규칙은 담보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는 담보설정자의 법인명이다.
- (b) 담보설정자의 법인명은 [각국이 특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는 현재의 문서, 법 또는 시행령에 의하여] 특정된다.

권고사항 제26항 (담보설정자의 식별자(특별한 경우))

등기규칙은 [당해 주체가 도산절차 중에 있거나 재산의 위탁자 또는 대표자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관한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 을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27항 (담보권자의 식별자)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 (a) 담보권자가 자연인이라면 그 식별자는 권고사항 제24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름이다.

(b) 담보권자가 법인이라면 그 식별자는 권고사항 제25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름이다.

(c) 담보권자가 권고사항 제26항에서 언급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식별자는 권고사항 제26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름이다.

권고사항 제28항 (담보자산의 기술)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담보자산은 이를 합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의 해당란에 기술되어야 한다.

(b) 어떤 범주 안에 있는 동산 자산 전체를 언급하는 일반적 기술은 그 특정한 범주에 포함되는 담보설정자의 모든 현재 또는 장래의 자산을 포함한다.

(c) 담보설정자의 모든 동산 자산을 언급하는 일반적 기술은 담보설정자의 모든 현재 또는 장래의 동산자산을 포함한다.

권고사항 제29항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최초 통지, 또는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를 변경하거나 담보권자를 추가하는 수정 통지의 등기는 그 통지가 권고사항 제24 내지 26항에 규정된 담보권자의 정확한 식별자를 제공하는 때에 한하여 유효하고, 부정확한 식별자가 제공된 경우에는 공공등기기록에서 담보권자의 정확한 식별자를 사용하여 검색할 때 그 통지가 추출될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

(b) 이 권고사항 (c)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자의 식별자 이외에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기술은 그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기술이 합리적 검색자를 심각하게 오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통지의 등기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c) 등기의 유효기간과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는 최고액에 관한 통지에 대한 부정확한 기술은 그것이 등기된 통지를 신뢰하는 제3자를 심각하게 오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통지의 등기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d) 이 권고사항 (a) 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 담보설정자의 식별자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충분하게 식별된 다른 담보설정자에 관하여는 그 통지의 등기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e) 담보자산의 불충분한 기술은 그 통지에서 충분하게 기술된 다른 담보자산에 관하여는 그 통지의 등기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제 6 절 수정 및 말소통지의 등기

1. 내 용

(1) 수정통지

1) 개 관

담보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등기된 통지에 포함된 정보의 수정을 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등기된 통지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등기 이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통지를 통해 등기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책임은 담보권자가 부담한다. 담보권자는 최초 등기 후 언제라도 수정등기를 할 수 있다.⁵³⁾ 새로운 담보설정자를 추가하거나 담보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의 승인을 얻어 수정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설정자의 승인은 통지의 등기 이전이나 이후 언제라도 얻을 수 있다. 서면으로 행한 담보 관련 약정은 승인으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⁵⁴⁾ 예컨대 새로운 담보설정

53)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73.

자와의 담보설정계약이나 담보자산 추가에 관한 계약은 그 자체로서 승인을 구성한다.

그 이외의 경우, 예컨대 담보설정자의 식별자에 변경이 생겨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거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설정순위를 자발적으로 낮추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설정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담보권자는 수정통지를 할 때 해당란에 최초 통지등기의 등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수정통지를 하여 수정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종전의 최초 등기가 삭제되지 않는다. 검색을 하면 최초 등기와 아울러 수정등기가 검색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수정대상을 하나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는 각국이 선택할 문제이지만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

2) 담보설정자의 명칭 변경

담보설정자의 명칭이 변경되면 제3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담보설정자에게 고유식별번호가 부여되고 이로써 검색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혼란은 최소화된다. 그러나 입법지침은 담보설정자의 명칭을 주된 정보정렬과 검색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담보설정자의 명칭 변경에 따른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권자가 이 경우 수정등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한편 담보설정자의 명칭 변경 이후이면서 수정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지침은 담보권자가 담보설정자의 명칭 변경 후 특정한 단기의 유예기간(예컨대 15일) 내에 수정통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종전의 등기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 임차인, 라이선시, 그 밖의 다른 담보채권자는 보호되도록 권고한다.⁵⁵⁾

54)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71 and A/CN.9/WG.VI/WP.54/Add. 1, para. 60.

55)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61.

담보설정자의 명칭이 변경되어 수정등기가 이루어진 때에도 종전의 명칭에 따른 등기 자체가 삭제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제3자는 종전의 명칭과 새로운 명칭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검색할 수 있다.

3) 담보자산의 이전

담보설정자가 담보자산을 양도, 임대 또는 라이선스하는 경우 양수인, 임차인 또는 라이선스는 통상적으로 당해 자산이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가지는 담보권의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정을 감수하면서 권리를 취득할 것이다.⁵⁶⁾ 한편 이 경우 양수인, 임차인 또는 라이선스와 담보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게 되는 제3자는 그 자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양수인, 임차인 또는 라이선스를 검색기준으로 삼아 검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해 담보자산은 최초 담보설정자를 식별자로 하므로 검색하더라도 위 담보자산에 관한 담보관계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담보권자가 양수인, 임차인 또는 라이선스의 명칭을 새로운 추가적인 담보설정자로 수정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한편 입법지침은 담보권자가 이러한 변화를 수정등기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의 법적 취급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접근방법의 가능성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선택은 각국의 법률에 맡긴다.⁵⁷⁾

첫 번째 접근방법은 입법지침에서 담보설정자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권고하는 것과 유사하다.⁵⁸⁾ 만약 담보권자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단기의 유예기간 동안 수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두 번째 접근방법은 첫 번째 접근방법과 유사하지만 유예기간의 기산점이 담보권자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때라는 점에서 첫

56)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79.

57)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78-80, and rec. 62.

58)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61, and paras. 6-8.

번째 접근방법과 구별된다.

세 번째 접근방법은 수정 여부가 전적으로 담보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수정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4) 우선권의 후순위화(subordination)

우선권을 가지는 담보권자는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또는 현재나 장래의 다른 권리자들을 위해 계약의 형태로 자신의 우선권을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다.⁵⁹⁾ 우선권의 후순위화는 당해 담보권자와 그로 인한 수혜자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계약을 공시하기 위해 수정통지를 등기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도 수정통지는 의무화되지 않는다.

5) 피담보채권 및 담보권의 이전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법지침은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이 함께 양도되도록 하고 있다.⁶⁰⁾ 입법지침에서는 이 경우 양도사실을 등기하는 것이 등기의 효력을 유지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⁶¹⁾ 어차피 제3자 입장에서는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를 기준으로 검색하므로 담보권자와 피담보채권이 변경되더라도 담보권의 존재와 범위를 검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양도사실의 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다만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담보권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해 담보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59)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94.

60)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s. 25 and 48.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채권양도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제10조에 기초한 것이다.

61)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75.

6) 새로운 담보자산의 추가, 삭제, 변경

담보권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담보자산을 추가하는 수정통지를 등기하고자 한다. 예컨대 최초 담보설정 이후 동일한 담보설정자로부터 새로운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는 최초 담보설정 당시 예정했던 담보자산의 일부를 누락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등기제도는 담보권자가 새로운 담보자산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물론 담보권자가 새로운 담보자산에 대해 새로운 최초의 통지를 하여 등기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방법을 취하건 새로운 담보자산에 대한 담보권은 그 내용이 등기되어 검색가능하게 될 때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⁶²⁾

이는 담보자산을 삭제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예컨대 특정 자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 그 자산에 대한 기술부분을 등기 기록에서 제거하여야 할 수도 있다. 또는 최초 담보설정 당시 예정했던 담보자산보다 넓은 범위의 담보자산이 잘못 등기되어 그 오류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담보자산의 추가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담보자산을 삭제할 수 있도록 등기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기존 담보자산에 대한 기술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최초 등기시에는 “모든 체리(cherry) 색깔의 가구”라고 기술하였으나 그 이후 소유자가 이를 녹색으로 새로 칠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최초 등기시에는 특정한 창고에 있는 재고자산 전부를 담보자산으로 기술하였는데 그 이후 재고자산의 위치가 다른 창고로 변경되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담보자산의 추가, 삭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보자산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처럼 기술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변경된 시점부터 담보자산에 대해 제3자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담보자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이상 그

62)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70.

속성에 대한 기술이 변경되더라도 제3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최초 등기시부터 계속하여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 등기 유효기간의 연장

입법지침은 담보권자가 등기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⁶³⁾ 만약 새로운 통지로서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담보권자는 기존에 구축하여 놓은 우선
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등기에 기초하여 유효기간
을 연장하는 수정등기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다.

등기 유효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몇 가지 선택지가 존재한다. 우선
최초 통지의 등기 유효기간이 법률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는 경우(선
택지 A)에는 등기 시스템은 수정통지가 접수되면 법률에 의하여 고정
되어 있는 그 유효기간만큼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최초 통지의 등기 유효기간이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되는 경우
(선택지 B)에는 등기 시스템은 당사자가 연장되는 유효기간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최초 통지의 등기 유효기간
이 법률에서 정한 최장기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되는
경우(선택지 C)에는 등기 시스템은 당사자가 연장되는 유효기간을 스
스로 선택하되 법률에서 정한 최장기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 운영되
어야 한다.

8) 담보권자 정보의 종합 수정(global amendment)

담보권자의 식별자나 주소는 합병, 양도 그 밖에 등기 이후에 발생
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때 담보권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
를 효율적으로 수정하기 위해 등기제도는 담보권자에 관한 정보를 한
꺼번에 종합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

63)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69.

해서는 해당 양식에 이러한 종합 수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담보권자가 복수라면 각 담보권자는 자신에 해당된 사항만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말소통지

수정통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법지침은 담보권자가 언제라도 말소통지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⁶⁴⁾ 말소통지에는 담보설정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등기말소는 담보설정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말소통지를 할 때 담보권자는 최초 통지시 부여되었던 등기번호를 입력하면 충분하다. 수정통지와는 달리 말소통지가 등기되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공공등기기록에서 제거된다. 다만 이러한 내용들은 별도로 저장되어 필요한 경우에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한다.⁶⁵⁾

만약 담보권자가 실수로 등기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거나 말소통지를 등기한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새로운 최초의 통지를 등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지침은 이 경우 새로운 통지등기의 유효기간은 그 등기시점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한다.⁶⁶⁾ 따라서 담보권자는 그 사이에 새로운 등기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또한 담보자산의 후순위 담보권자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항할 수 없게 된다.⁶⁷⁾

어떤 국가에서는 담보권자에게 관대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기도 한다. 이 접근방법에 의하면 담보권자는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또는 그러한 기간의 제한 없이, 잘못을 바로잡으면 기존의 우선권과 제3자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하는 국가에서도 유효기간 만료 또는 말소 후 새로운 등기를 하기 전의 기간 동안

64)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73.

65) A/CN.9/WG.VI/WP.54/Add. 2, paras. 44 and 45.

66)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47.

67)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V. paras. 132-134, and rec. 96.

새로운 등기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변경으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의 후순위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잘못을 바로잡은 담보권자는 기존의 후순위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우위에 서게 되지만(이는 기존의 후순위담보권자에게도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후순위담보권자보다도 순위가 뒤지는 새로운 제3자에 대해서는 열위에 서게 되어 우선권의 순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지침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잘못 말소통지를 등기한 담보권자는 새로운 등기를 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가지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3) 담보권자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수정 또는 말소통지의 효력

앞서 설명하였듯이 최초 통지나 일정한 범위의 수정통지에 대해서는 담보설정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러한 통지 주체는 담보권자이므로 담보권자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담보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즉 담보권자의 의사에 반한 수정통지나 말소통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3자가 담보권자를 사칭하거나 실수로 수정통지나 말소통지의 등기를 하거나, 심지어 등기소의 직원이 이러한 등기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입법지침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입법지침 권고사항 제47항은 담보권자가 실수로 말소통지를 한 경우 담보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우선권은 상실되고 새로운 통지가 등기된 때부터 새롭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권고사항 제47항은 담보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말소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다루지는 않는다. 이는 수정통지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권고사항 제55항 (d)는 등기소로 하여금 수정통지나 말소통지가 등기되면

그 사본을 담보권자에게 보내서 그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입법지침은 이 경우 담보권자와 다른 권리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또한 권고사항 제74항은 말소통지의 등기에 따른 정보제거에 관하여 규정하지만, 그 등기가 담보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각국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① 최초 통지를 수정하거나 말소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적, 기술적 보안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② 등기자나 담보권자에게 수정통지나 말소통지가 등기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③ 수정통지나 말소통지가 담보권자의 승인 없이 등기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통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④ 담보권자의 승인 없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⑤ 만약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더라도 담보권자는 그러한 잘못된 등기가 있는 후 새롭게 등기한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잘못된 등기를 믿고 새롭게 등기한 제3자를 담보권자에 앞서 보호함으로써 제3자 보호를 우선하는가 하면, 어떤 국가에서는 잘못된 수정통지나 말소통지의 등기에 대해서는 담보권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음으로써 담보권자를 우선하기도 한다. 담보권자가 잘못을 바로잡는 새로운 등기로써 그 이전에 등기를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기존의 후순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접근방법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우선권 순환 문제가 발생한다. 등기지침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 특정한 방향으로 권고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상황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수정통지나 말소통지를 하기 위한 접근 자체를 엄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최

초의登記자에게 특정한 접근코드를 비밀리에 부여하고 그 접근코드를 이용해야만登記를 수정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4) 강제수정 또는 말소

입법지침은 담보권이 발생하거나 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도 담보登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⁶⁸⁾ 만약登記 후 담보설정에 관한 교섭이 결렬되거나 다른 이유로 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그 담보登記로 인하여 담보설정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담보登記 후 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되긴 하였지만登記된 범위가 계약의 범위보다 넓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登記된 담보자산 범위가 그 이후 체결된 담보계약상 담보자산범위보다 넓은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 담보권자는 수정통지나 말소통지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하고 만약 담보권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담보설정자가 약식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⁶⁹⁾

각국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수정 또는 말소는 담보설정자 또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공무원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경우이건 이러한 수정 또는 말소를 명하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명령이 위와 같은 요청에 첨부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명령 전체가 첨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주문 부분만 첨부되면 되는지, 또한 정본이 첨부되어야 하는지, 정본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을 각국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2. 권고사항

권고사항 제30항 (수정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

68)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67; A/CN.9/WG.VI/WP.54/Add. 2, paras. 16-18.

69) Secured Transactions Guide, rec. 72.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수정 통지는 해당란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i) 수정과 관련된 최초 통지의 등기번호

(ii) 정보가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면, 권고사항 제23항에 따라 최초 통지에 관련된 유형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방식에 따라 그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될 정보

(b) 수정 통지는 통지 안의 하나 또는 여러 유형의 정보와 관련될 수 있다.

권고사항 제31항 (복수의 통지에 있어서 담보권자 정보의 종합 수정)

선택지 A

등기규칙은 복수의 등기된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자는 하나의 종합 수정으로 그 모든 통지들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선택지 B

등기규칙은 복수의 등기된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자는 하나의 종합 수정으로 그 모든 통지들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등기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32항 (말소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

등기규칙은 말소 통지는 해당란에 말소와 관련된 최초 통지의 등기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권고사항 제33항 (강제 수정 또는 말소)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담보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정 또는 말소 통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 (i) 최초 또는 수정통지의 등기가 담보설정자에 의해 전혀 또는 통지에 기술된 정도로까지는 승인되지 않은 때
- (ii) 최초 또는 수정통지의 등기가 담보설정자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그 승인이 철회되었고 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
- (iii) 담보설정계약이 수정됨으로써 통지 안에 포함된 정보를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게 만들었을 때
- (iv) 당해 통지가 관련된 담보권이 변제 기타 피담보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담보권자가 신용을 추가로 공여한다는 약속이 없을 때

(b) 이 권고사항 (a) (ii)부터 (a) (iv)까지의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와 합의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 담보설정자로부터 서면요청을 받은 뒤 [각국에 의해 정해지는 짧은 기간, 예컨대 15일] 내에 담보권자는 이 권고사항 (a)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야 한다.

(d) 이 권고사항 (b)항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사항 (c)항에 따라 담보설정자로부터 받은 서면요청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에 의해 추가의 수수료나 비용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e) 담보권자가 이 권고사항 (c)항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설정자는 상황에 따라 약식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수정 또는 말소통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f)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에는 이 권고사항 (c)항에 기재된 기간의 만료 전에도 상황에 따라 약식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수정 또는 말소통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g) 이 권고사항 (e)항과 (f)항에 따른 수정 또는 말소통지는

선택지 A

관련 사법 또는 행정명령 사본이 첨부된 통지의 수령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등기소에 의해 등기되어야 한다.

선택지 B

관련 사법 또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사본을 처부하여 사법 또는 행정 담당관에 의해 등기되어야 한다.

제 7 절 검색 기준과 검색 결과

1. 내 용

(1) 검색기준

입법지침에서는 담보설정자의 식별자에 따라 등기기록의 정보가 정렬되거나 조직되어 검색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등기소는 최초 통지에 부여된 고유한 등기번호와의 관련성 하에서 그 모든 후속 통지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등기번호는 또다른 검색기준이기도 하다.

어떤 국가에서는 높은 가치를 가지는 특정한 담보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통지시 등기의 효력발생이나 우선권 확보를 위해 그 자산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입법지침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긴 하나 특정한 권고사항을 제시하지는 않는다.⁷⁰⁾ 만약 어떤 국가가 이러한 접근방법을 채택한다면 그 국가의 등기규칙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자산에 관하여 무엇이 정당한 일련번호에 해당하는지를 규

70)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34-36.

정한 뒤 이를 또다른 검색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담보권자는 직접 또는 등기소 직원을 통하여 단일한 종합수정(a single global amendment)을 통해 관련된 모든 통지에 있는 담보권자의 식별자 또는 주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담보권자의 식별자는 일반적으로 검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담보권자의 경쟁자가 담보권자의 식별자를 통하여 담보권자의 고객 명단(client list)을 취득하는 데 이용될 수도 있다.⁷¹⁾

(2) 검색결과

검색결과는 특정된 검색기준에 상응하는 각각의 등기된 통지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검색기준에 상응하는 통지된 등기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야 한다. 만약 전자등기시스템에서 검색자가 검색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검색업무는 수행되지 않고 그 대신 스크린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경고 문구가 뜨도록 해야 한다. 만약 종이 형태의 검색에서 검색자가 검색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등기소는 검색요청양식에 그 정보가 없으므로 검색결과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검색거절양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⁷²⁾ 한편 각국은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어느 범위의 정보까지 제공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통지등기는 그 통지가 담보설정자의 정확한 식별자를 검색기준으로 이용하여 검색업무를 수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유효하다.⁷³⁾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검색기준이 입력되어야 검색결과가 나타나는지는 각국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나라는 검색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설정자의 식별자가 정확하게

71)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81.

72) A/CN.9/781/Add. 2, Form VIII.

73) A/CN.9/WG.VI/WP.54/Add. 3, paras. 20-23.

입력되어야 비로소 그 통지가 검색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나라는 검색기준에 해당하는 담보설정자의 식별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와 가장 유사한 통지가 검색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검색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검색자에게는 불명확성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까지 나타나게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어떤 등기 시스템 하에서는 검색결과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한 등기결과를 보여주는 것인지를 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준일자(currency date)”는 통상 통지가 등기소에 접수되는 시점에 그 통지의 등기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등기제도 하에서 그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기준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그 이후 검색 시점까지 다른 등기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입법지침에서 상정하는 등기제도에서는 통지의 접수시점이 아니라 통지가 등기되어 일반인이 검색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시점에 비로소 등기가 유효하게 된다.⁷⁴⁾ 이러한 등기제도 하에서는 기준일자를 표시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검색 당시 나타나지 않은 등기가 있더라도 이러한 등기는 제3자에게 유효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권고사항

권고사항 제34항 (검색기준)

등기규칙은 공공등기기록의 검색이 행해지는 기준이

(a) 담보설정자의 식별자이거나

(b) 등기번호

라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

74)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s. 102-105, and rec. 70.

권고사항 제35항 (검색결과)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등기소는 검색이 수행된 일시를 나타내는 검색결과를 제공하여야 하고, 특정된 검색기준에 상응하는 각각의 등기된 통지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검색기준에 상응하는 통지된 등기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야 한다.

(b) 검색결과는 [검색기준에 유사하게 상응하는 공공등기기록의 정보를 나타내고, 이때 무엇이 유사하게 상응하는 것인지에 대해 등기소가 사용할 규칙을 각국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검색기준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공공등기기록상의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

(c) 검색자의 요청에 따라 등기소는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검색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8 절 등기 및 검색 수수료

1. 내 용

입법지침에서는 국가가 등기나 검색비용을 통하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수료를 책정하기보다는 순수하게 비용상환의 차원에서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권고한다.⁷⁵⁾ 과도한 수수료와 거래세는 등기제도의 효용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담보법의 성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비용상환 차원의 수수료를 책정할 때는 등기제도의 확립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이외에도 등기소 직원들의 임금, 등기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와 교체, 등기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기제도 이용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등 등기제도의 운영 전반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전자등기와 종이등기의 초기 비용 차이를 감축

75)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V. para. 37, and rec. 54 subpara. (i).

시켰다. 한편 등기제도의 운영비용은 전자등기 쪽이 훨씬 낮다. 등기소 직원이 개입하지 않고 채권자와 검색자가 전자적으로 통지를 접수시키거나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업과 연계하여 전자등기제도를 구축하는 때에는 그 사기업이 그 등기제도의 인프라에 일정한 비용을 투자하되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받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그 비용을 회수할 수도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등기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아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는 분명히 등기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겠지만 이를 위해 일반적인 납세자가 조성한 세원이 전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말소통지의 등기만 무료로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전자검색만 무료로 허용하기도 한다.

이미 언급하였듯이,⁷⁶⁾ 담보권자로 하여금 통지등기의 유효기간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 수수료를 유효기간의 길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차등적 부과는 담보권자가 필요 이상으로 유효기간을 늘리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액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앞서 본 순수한 비용상환 차원의 수수료 부과 원칙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수수료가 책정되면 이를 등기규칙에서 나타내야 한다. 수수료를 나타내는 규정을 형식적인 규칙(regulation)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의 형식으로 할 것인지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이다. 만약 비공식적인 행정 가이드라인의 형식을 취한다면 수수료 부과에 있어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등기소가 쉽게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76) A/CN.9/WG.VI/WP.54/Add. 2, paras 9 and 10.

종이등기와 전자등기가 병존하는 시스템에서는 종이등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등기소 직원들이 등기절차에 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차등적인 수수료 부과는 정책적으로 종이등기제도로 부터 전자등기제도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2. 권고사항

권고사항 제36항 (등기소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선택지 A

(a) 다음 수수료는 등기소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다.

(i) 통지의 등기

a. 종이 형태 [...]

b. 전자 형태 [...]

(ii) 검색

a. 종이 형태 [...]

b. 전자 형태 [...]

(iii) 증명서

a. 종이 형태 [...]

b. 전자 형태 [...]

(b) 등기소는 등기소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등기소 이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선택지 B

[각국이 정하는 행정 당국] 은 규정으로 등기소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그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다.

선택지 C

등기소의 다음 서비스 [등기 서비스, 검색 서비스 또는 전자 검색 서비스 등 각국이 정하는 서비스] 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 4 장 UNCITRAL 담보등기지침의 시사점

제 1 절 우리나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UNCITRAL 입법지침이나 등기지침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률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동산과 채권에 관한 담보등기제도가 도입되었다. 서론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UNCITRAL의 작업성과는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동산담보법과 UNCITRAL 규범 사이의 인연은 이미 시작된 셈이다. 향후 양자의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도모하려면 양자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성안된 등기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UNCITRAL의 입법지침 내지 등기지침과 우리나라의 동산담보법을 정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동산담보법의 구체적인 개선점까지 제시하는 것은 이 보고서의 연구범위 밖에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장래의 작업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양자를 개괄적으로나마 비교하고 UNCITRAL의 등기지침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에 나타난 등기제도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를 등기지침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담보등기부

○ 우리나라 동산담보법

동산담보법상 담보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담보권설정자별로 저장한 보조기

역장치를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즉 우리나라는 전자적 형태의 등기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의 지원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중앙관리소를 둔다(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3조 제1항, 이하 위 규칙은 “규칙”이라고만 한다).

한편 담보등기부는 다시 그 담보목적물에 따라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로 구분한다(법 제2조 제8호). 그 중 동산담보등기부는 일반적인 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공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동산은 물론이고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 예컨대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소형선박, 기업재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등기되거나 등록되는 동산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법 제3조 제3항). 그 이외에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해서는 새로운 등기부를 만들지 않고 기존의 특허원부, 저작권등록부 등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 장부에서 담보권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58조 제1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산담보법 제2장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되므로(법 제61조),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적재산권도 원칙적으로 동산담보법의 규율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UNCITRAL 등기지침

등기지침상 등기부는 종이 형태일 수도 있고 전자적 형태일 수도 있다. 예컨대 권고사항 제5항 (b)에서는 “만약 등기소의 서비스가 전자적인 통신수단을 통하여 제공된다면”이라고 함으로써 등기소의 서비스가 어떤 형태를 띠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는 등기지침이 하나의 추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성격의 규범이고, 상세한 내용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등기지침에서는 단일한 등기부를 둘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산담보법처럼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를 나누어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침

묵하고 있다. 이 역시 등기지침의 추상적 성격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편 등기지침은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등의 등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입법지침 권고사항 제4항에서는 비행기, 철도차량, 우주물체와 선박 및 다른 범주의 이동장비에는 그것이 국내 법률 또는 입법국이 체약국인 국제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범위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률에 의한 규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등기지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이 취하는 태도와 같다. 지적재산권은 등기지침의 적용범위 내에 있다.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에서도 그 법에 따른 지적재산권 등록부를 별도로 창설하지는 않았지만 그 법적 규율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제2장을 적용하고 있다.

◎ 인적 편성주의

○ 우리나라 동산담보법

우리나라 동산담보등기부(또는 채권담보등기부)와 부동산등기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편성방식에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지만 동산담보등기부는 인적 편성주의를 취한다. 이는 부동산에 비해 동산이나 채권의 숫자가 현저히 많고 다양하므로 그 각각에 대해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은 담보권설정자별로 담보등기부를 작성한다(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검색에 있어서도 담보권설정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 UNCITRAL 등기지침

등기지침 역시 입법지침이 취하는 태도에 따라 인적 편성주의를 취한다. 이에 따라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담보설정자의 식별자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다(권고사항 제24항 내지 제26항 참조). 또한 등기기록을 검색함에 있어서도 담보설정자의 식별자와 등기번호가 검색기준이 된다(권고사항 제34항). 이처럼 인적 편성주의를 취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동산담보법과 등기지침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 당사자의 등기신청과 등기관이 등기사무처리

○ 우리나라 동산담보법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에 따르면 담보등기는 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법 제38조), 이러한 담보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법 제41조 제1항). 즉 부동산등기와 마찬가지로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된다. 판결에 의한 등기,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 변경 또는 경정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부동산등기의 경우와 같다(법 제41조 제2, 3항). 등기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있고(법 제42조),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법 제43조 제1항) 이 역시 부동산등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다.

한편 등기사무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취급한다(법 제39조 제1항). 등기사무는 등기관이 처리하는데,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담보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법 제40조 제2항). 등기관은 신청각하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46조). 이러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제32조 제1항). 그리고 등기

관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할 수도 있다(법 제46조 단서, 규칙 제32조). “사건이登記할 것이 아닌 경우(2호)”나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3호)”,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첨부서면과 들어맞지 아니한 경우(7호)” 등이登記관의 심사를 요하는 대표적인 사유들이다.

○ UNCITRAL 등기지침

등기지침에 따르면 담보등기는 통지의 등록, 수정, 말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이러한 등기는 그 통지 주체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와 같은 공동신청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제출된 통지에 있는 정보를 등기기록에 입력하고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등 기계적인 업무로 주로 구성된다(권고사항 제3항 참조). 우리나라 동산담보법과는 달리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사유를 넘어서는登記관의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권고사항 제7항에서는 등기자의 신원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통지등기의 승인 존재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통지내용의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登記관의 심사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서에 요구되는 정보 자체가 입력되지 않거나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등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사유에 따라 등기나 검색 서비스가 거절될 수 있을 뿐이다(권고사항 제8항 내지 제10항 참조).

◎ 담보등기의 효과

○ 우리나라 동산담보법

담보등기는 담보권의 득실변경을 초래한다(법 제7조 제1항). 이 점에서 부동산의 물건변동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식주의는 동산담보등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동산담보등기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여

기존의 동산담보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동산담보법의 시행 이후에도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양도담보는 여전히 유효하게 설정될 수 있다. 즉 부동산과 달리 점유담보와 비점유담보가 공존하는 셈이다.

담보등기 사이의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법 제7조 제2항). 등기된 동산담보와 등기되지 않은 동산담보 사이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와 인도의 선후에 따른다(법 제7조 제3항). 따라서 양도담보가 먼저 설정되고 그 이후 동산담보등기가 행하여졌다면 양도담보가 동산담보등기보다 앞선다.

동일한 동산에는 여러 개의 동산담보권이 등기될 수 있는데 이때 그 순위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법 제7조 제2항). 이는 부동산물권변동의 법리 및 부동산등기의 순위결정기준과 일치한다. 여기에서 등기의 순서는 등기 접수순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등기가 마쳐지면 접수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43조). 이처럼 등기의 선후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접수연월일 이외에도 접수시각까지 기록해야 한다(규칙 제33조).

○ UNCITRAL 등기지침

UNCITRAL이 상정하는 법률관계에 따르면 담보등기는 담보권의 득실변경을 초래하는 법률요건이 아니다. 담보권의 효력은 당사자 간의 효력과 제3자에 대한 효력(대항력)으로 나누어진다. 당사자 간에는 담보약정이 체결됨으로써 담보권의 효력이 발생한다.⁷⁷⁾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⁷⁸⁾ 그러한 점에서 입법지침이나 등기지침은 형식주의가 아니라 의사주의 내지 대항요건주의를 취한다.

77)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I. para. 1. and rec. 13.

78) Secured Transactions Guide, chap. III. para. 1. and rec. 31. 한편 예외적으로 점유나 특별법에 따른 등록 등으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rec. 34 이하 참조.

최초 통지와 수정통지의 등기는 통지 정보가 등기기록에 입력되어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 가능하게 된 일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권고사항 제11항 (a)). 말소통지의 등기는 더 이상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일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권고사항 제11항 (d)). 이처럼 등기지침에서는 등기가 접수된 때가 아니라 등기내용이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검색가능하게 된 때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등기의 순위도 이 시점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그 결과 접수시각을 기록해야 할 필요도 없다.

제 2 절 우리나라 동산담보등기제도에 대한 시사점

1. UNCITRAL 입법지침 및 등기지침과의 근본적 차이점

우리나라 동산담보법과 UNCITRAL의 입법지침 및 등기지침은 모두 동산담보를 통한 금융을 활성화하자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공시방법의 미흡함이었다. 부동산과 달리 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담보등기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동산담보법과 UNCITRAL의 입법지침 및 등기지침은 모두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적인 동산담보등기제도의 도입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등기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특히 부동산등기제도와 동산등기제도를 유사하게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양자를 다른 틀에서 설계할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는 결국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를 등기제도에 반영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입법지침 및 이에 기초한 등기지침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동산 담보등기제도를 관찰해 보면 부동산과 동산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그 숫자와 종류가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부동성(不動性) 때문에 이를 특정하여 공시하는 것이 동산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적 편성주의가 아니라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제3자가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도 매우 편리하다. 반면 동산은 부동산에 비해 그 숫자와 종류가 현저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변동성(變動性)으로 인해 이를 특정하여 공시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동산에 대해서는 물적 편성주의가 아니라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실적 또는 잠재적 담보설정자의 숫자는 동산이나 채권의 숫자에 비해 훨씬 적고 그 유형도 단순하므로 인적 편성주의를 취하는 것은 제3자가 검색작업을 할 때에도 편리하다. 물론 인적 편성주의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예를 들어 제3자의 입장에서는 담보설정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담보설정자를 쉽게 파악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다 보면 담보설정자의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가 문제될 수도 있다. 담보설정자나 담보권자의 지위가 이전되면 기존의 담보권관계를 검색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산이나 채권에 대해서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적 편성주의를 채택하는 것이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등기부 편성방식의 변화에 관한 한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은 UNCITRAL 입법지침이나 등기지침과 입장을 같이 한다. 그 이외에도 담보약정이나 담보등기의 개념을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 기준 또는 기능적 기준으로 파악한다거나, 점유 대신 등기를 통해 동산이나 채권담보권을 설정하고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한다거나, 인적 편성주의에 따라 담보설정자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만들도록 하는 것

은 모두 UNCITRAL 입법지침이나 등기지침과 궤를 같이 한다. 그 점에서 우리 동산담보법은 동산담보 현대화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적인 등기방식에 관한 차이이다. UNCITRAL이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 현대적 담보법제의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 등기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은 현대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입법지침이나 등기지침은 통지등기(notice registration) 제도를, 우리 동산담보법은 권리등기(title registration)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지등기제도는 권리에 대한 심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등기하는 제도이고, 권리등기제도는 권리의 존재와 범위를 심사하여 등기하는 제도이다. 통지등기제도가 사인(私人)에게 등기의 주도권을 내어 주는 제도라면, 권리등기제도는 국가가 여전히 등기의 주도권을 보유하는 제도이다. 통지등기제도가 등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라면, 권리등기제도는 등기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물론 통지등기제도가 등기의 진정성을 도외시하는 것도 아니고, 권리등기제도가 등기의 효율성을 도외시하는 것도 아니다. 통지등기제도 하에서도 일단 채권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권리등기제도 하에서도 등기관에게 형식적 심사권만 부여하여 신속한 등기절차를 도모한다. 입법지침에 따르면 일방의 통지에 따른 등기만으로도 담보권 설정이 완성되지만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에 따르면 쌍방이 공동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관의 심사를 거쳐 등기가 이루어져야 담보권 설정이 완성된다. 등기에 관한 통지등기제도는 동산과 부동산을 다르게 취급하고, 권리등기제도는 동산과 부동산을 비슷하게 취급한다. 이처럼 양자는 성격을 전혀 달리하므로 어느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는 동산담보등기제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 동산담보법과 UNCITRAL 입법지침 내지 등기지침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통지등기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성

이러한 두 가지 갈림길 앞에서 우리 동산담보등기제도를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다.

UNCITRAL의 기본적인 입장은 저비용·고효율의 등기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즉 동산담보등기의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공시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동산담보를 통한 금융을 활성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거시적인 문제의식을 담아낸 등기제도가 통지등기제도이다. 통지등기제도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등기소의 심사과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과정에서 부정확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사후에 당사자 또는 법원에 의한 말소로 그 부정확성을 해소한다. 이는 미국의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제9편이나 유럽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 제9편⁷⁹⁾이 취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 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관이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는 우리나라의 등기제도와는 확연하게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동산담보등기제도는 부동산등기제도와 골격과 내용에 있어서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통지등기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 장기적으로는 UCC나 UNCITRAL 입법지침처럼 통지등기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⁸⁰⁾가 있는가 하면, 현재

79) 이에 대해서는 정소민, “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 - DCFR과 우리나라의 채권담보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61호 (2012. 12) 참조.

80) 김재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구성과 내용”, 민법론

의 담보등기방식은 우리나라 물권변동의 제반원칙과 등기체제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통지등기제도로 전환할 경우 혼란이 초래되고 거래비용을 높이므로 이러한 전환이 필요없다는 견해⁸¹⁾도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건 우리나라의 동산담보법이 제정, 시행된 것은 바로 최근의 일로서 그 동안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내놓은 법률인만큼 지금 바로 그 근간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산담보등기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관점에 서면 통지등기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론적으로도 동산이나 채권의 담보등기는 부동산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정도의 신속성, 효율성, 유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제도의 전환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하여 초래될 혜택이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UNCITRAL 입법지침 주해의 내용은 염두에 둘 만 하다.⁸²⁾

IV, 2011, 272면.

81) 김현진, 동산 채권담보권 연구, 2013, 448-449면.

82) 석광현,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법무부, 2010. 18면.

제 5 장 결 론

지금까지 UNCITRAL 등기지침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이 우리나라 동산담보법과 어떻게 다른지, 장차 동산담보법제의 개선에 관하여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보고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등기지침은 통지등기제도를 근간으로 삼고 있어 우리나라 법률가가 보기에는 생소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등기지침의 모태인 UNCITRAL 입법지침 자체가 UCC를 비롯한 영미법적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동산담보법이 입법지침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등기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 법제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등기절차를 가능한 한 단순화, 간략화하여 등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을 줄임으로써 담보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은 법제를 불문하고 타당하다. 공동신청주의나 등기관을 심사하지 않는 점, 포괄적 담보자산의 기술을 허용하는 점(권고사항 제28항), 단일한 통지만으로 여러 개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점(권고사항 제14항)은 모두 이러한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는 점들이다. 또한 등기소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권고사항 제5, 6항 참조), 등기 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 책정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권고사항 제36항), 그 이외에 담보설정자의 식별자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권고사항 제24 내지 제26항)이나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와 등기의 효력의 상호관계를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 점(권고사항 제29항)도 새겨 볼 점들이다.

UNCITRAL에서는 담보거래에 관하여 등기지침을 성안한 뒤 이번 12월부터 담보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

이다. 등기지침이 등기제도에 관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반면, 모델법은 담보거래와 관련된 실체법, 절차법, 집행법, 국제사법적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어 그 규모와 비중에서 등기지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물론 모델법은 이미 성안된 입법지침과 등기지침 등의 토대 위에서 작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모델법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내용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법에 주목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국제사회에 가질 의미 때문이다. 단순한 지침(guide)과 달리 모델법(model law)은 당해 분야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규범의 형태로 표출하는 성과물로서 각국의 입법과정에 더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내에서도 향후 수년간 진행될 모델법에 관한 후속 작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첨언한다.

부 록

- 권고사항(Recommendations) 원문/번역문 대조표 -

원문	번역문
<p>I. 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security rights registry</p>	<p>I. 담보등기소의 설립과 기능</p>
<p>Recommendation 1. Establishment of the registry 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the registry is established for the purposes of receiving, storing and making accessible to the public information in registered notices with respect to security rights in movable assets.</p>	<p>권고사항 제1항 (등기소의 설립) 등기규칙은 등기소가 동산담보권에 관하여 등기된 통지의 정보를 수령, 저장하고 일반인에게 접근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2. Appointment of the registrar 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the person authorized by the enacting State or by the law of the enacting State] appoints the registrar, determines the registrar’s duties and monitors the registrar’s performance.</p>	<p>권고사항 제2항 (등기관의 임명) 등기규칙은 당해 국가 또는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승인된 자가 등기관을 임명하고, 그의 의무를 정하며, 그의 임무수행을 감독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3. Functions of the registry 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the functions of the registry include: (a) Providing access to the services of the registry and the reason for refusing access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s 4, 6, 7 and 9; (b) Publicizing the means of access to the services of the registry, and</p>	<p>권고사항 제3항 (등기소의 기능) 등기규칙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등기소의 기능을 규정하여야 한다. (a) 권고사항 제4, 6, 7, 9항에 따라 등기소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접근거절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 (b) 권고사항 제5항에 따라 등기소의 서비스에 접근할 방법 및 등기소 사</p>

원문	번역문
<p>the opening days and hours of any office of the registry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5;</p> <p>(c) Providing the reason for the rejection of the registration of a notice or a search request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s 8 and 10;</p> <p>(d) Enter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 notice submitted to the registry into the registry record, and indicating the date and time of each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1;</p> <p>(e) Assigning a registration number to the initial notice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5;</p> <p>(f) Indexing or otherwise organizing the information in the registry record so as to make it searchable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6;</p> <p>(g) Protecting the integrity of the information in the registry record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7</p> <p>(h) Providing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secured creditor with a copy of the registered notice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8;</p> <p>(i) Enter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n amendment notice into the reg-</p>	<p>무실의 업무시간을 공시하는 것</p> <p>(c) 권고사항 제8, 10항에 따라 통지의 등기거절 또는 검색요청거절의 이유를 제공하는 것</p> <p>(d) 권고사항 제11항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된 통지에 있는 정보를 등기기록에 입력하고, 각 등기의 일시를 기록하며, 권고사항 제12항에 따라 최초 통지에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것</p> <p>(e) 권고사항 제15항에 따라 최초의 통지에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것</p> <p>(f) 권고사항 제16항에 따라 등기기록 안의 정보를 정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직하여 검색가능하게 하는 것</p> <p>(g) 권고사항 제17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정보의 진실성을 보호하는 것</p> <p>(h) 권고사항 제18항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제공하는 것</p> <p>(i) 권고사항 제19항에 따라 수정통지에 있는 정보를 등기기록에 입력하는 것</p> <p>(j) 권고사항 제20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취소통지의 등기에 기하여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등기된 통지에 있는 정보를 제거하는 것</p>

원문	번역문
<p>istry record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9;</p> <p>(j) Removing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 registered notice from the public registry record upon the expiry of its period of effectiveness or registration of a cancellation notice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20; and</p> <p>(k) Archiving information removed from the public registry record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21.</p>	<p>(k) 권고사항 제21항에 따라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제거된 정보를 보관하는 것</p>
<p>II. Access to the services of the registry</p>	<p>II. 등기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p>
<p>Recommendation 4. Public access</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any person may submit a notice or a search request to the registry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s 6 and 9.</p>	<p>권고사항 제4항 (공중의 접근)</p> <p>등기규칙은 권고사항 제6, 9항에 따라 누구든지 등기소에 통지 또는 검색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5. Operating days and hours</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If access to the services of the registry is provided through a physical office:</p> <p>(i) Each office of the registry is open to the public during [the days</p>	<p>권고사항 제5항 (운영일시)</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만약 등기소의 서비스가 물리적 사무실을 통하여 제공된다면,</p> <p>(i) 각 등기소 사무실은 [각국이 정하는 일시에] 공중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p>

원문	번역문
<p>and hours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 and</p> <p>(ii) Information about any registry office locations and their opening days and hours is publicized on the registry’s website, if any, or otherwise widely publicized, and the opening days and hours of registry offices are posted at each office;</p> <p>(b) If access to the services of the registry is provided through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electronic access is available at all times; and</p> <p>(c) Notwithstanding subparagraphs (a) and (b) of this recommendation:</p> <p>(i) The registry may suspend access to the services of the registry in whole or in part for a period of time that is as short as practicable; and</p> <p>(ii) Notification of the suspension and its expected duration is published on the registry’s website, if any, or otherwise widely publicized, in advance when feasible and, if not feasible, as soon thereafter as reasonably practicable, and, if the registry provides access to its services through physical offices, the</p>	<p>(ii) 등기소 사무실의 위치와 그 운영일시에 관한 정보가 등기소의 웹사이트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방법으로 널리 공시되어야 하고, 각 사무실에 그 운영일시가 게시되어야 한다.</p> <p>(b) 만약 등기소의 서비스가 전자적인 통신수단을 통하여 제공된다면, 전자적 접근은 언제나 가능하여야 한다.</p> <p>(c) 이 항의 (a), (b)항에도 불구하고,</p> <p>(i) 등기소는 등기소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동안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p> <p>(ii) 이 경우 가능하다면 사전에 그 서비스 차단과 예상 차단기간이 등기소의 웹사이트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방법으로 널리 공시되어야 하고, 사전 공시가 불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공시가 가능해지자마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소의 서비스가 물리적 사무실을 통하여 제공된다면 그 공고가 각 사무실에 게시되어야 한다.</p>

원문	번역문
notification is posted at each office.	
<p>Recommendation 6. Access to registration services</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Any person may submit a notice for registration if that person:</p> <p>(i) Uses the applicable notice form prescribed by the registry;</p> <p>(ii) Identifies itself in the manner prescribed by the registry; and</p> <p>(iii) Has paid, or made arrangements to pay to the satisfaction of the registry, any fee prescribed by the registry.</p> <p>(b) If access to registration services is refused, the registry provides the reason as soon as practicable.</p>	<p>권고사항 제6항 (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누구든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위해 통지를 제출할 수 있다.</p> <p>(i) 등기소가 규정한 양식의 사용</p> <p>(ii) 등기소가 규정한 방식에 따른 신원 제공</p> <p>(iii) 등기소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의 지급 또는 등기소가 인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지급약정</p> <p>(b) 만약 등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경우 등기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7. Verification of identity, evidence of authorization or scrutiny of the contents of the notice not required</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The registry maintains information about the identity of the registrant but does not require verification of the information;</p>	<p>권고사항 제7항 (신원의 진실성 확인, 승인에 관한 증거 또는 통지내용의 조사가 요구되지 않음)</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등기소는 등기자의 신원정보를 보유하지만 그 신원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은 요구하지 않는다.</p> <p>(b) 등기소는 통지등기의 승인 존재</p>

원문	번역문
<p>(b) The registry does not require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authorization for registration of a notice; and</p> <p>(c) Except as provided in recommendations 8, subparagraph (a), and 10, subparagraph (a), the registry does not conduct other scrutiny of the content of the notice, and in particular, it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registry to ensure that information entered in a designated field is complete, accurate and legally sufficient.</p>	<p>에 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p> <p>(c) 등기소는 통지내용의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 특히 소정의 칸에 입력된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법적 충분성 확보는 등기소의 책임이 아니다.</p>
<p>Recommendation 8. Rejection of the registration of a notice</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The registry rejects the registration of a notice if information is not entered in each required designated field or if the information entered is not legible; and</p> <p>(b) The registry provides the reason for the rejection as soon as practicable.</p>	<p>권고사항 제8항 (통지의 등기거절)</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등기소는 만약 요구되는 모든 칸에 정보가 입력되지 않거나 입력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등기를 거절한다.</p> <p>(b) 등기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절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9. Access to searching services</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Any person may submit a search request if that person:</p>	<p>권고사항 제9항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접근)</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누구든지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p>

원문	번역문
<p>(i) Uses the form prescribed by the registry; and</p> <p>(ii) Has paid, or made arrangements to pay to the satisfaction of the registry, any fee prescribed by the registry.</p> <p>(b) If access to searching services is refused, the registry provides the reason as soon as practicable.</p>	<p>경우에는 검색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p> <p>(i) 등기소가 규정한 양식의 사용</p> <p>(ii) 등기소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의 지급 또는 등기소가 인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지급약정</p> <p>(b) 만약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경우 등기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10. Rejection of a search request</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The registry rejects a search request if it does not provide a search criterion in a legible manner; and</p> <p>(b) The registry provides the reason for the rejection as soon as practicable.</p>	<p>권고사항 제10항 (검색 서비스의 거절)</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등기소는 만약 검색 요청이 그 검색의 기준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다.</p> <p>(b) 등기소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거절이유를 제공하여야 한다.</p>
<p>III. Registration</p>	<p>Ⅲ. 등기</p>
<p>Recommendation 11. Time of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of a notice</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The registration of an initial or amendment notice is effective from the date and time when the information in the notice is entered into the registry record so as to be ac-</p>	<p>권고사항 제11항 (통지의 등기효력 발생시점)</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최초 통지 또는 수정통지의 등기는 통지 정보가 등기기록에 입력되어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가능하게 된 일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원문	번역문
<p>cessible to searchers of the public registry record;</p> <p>(b) The registry maintains a record of the date and time when the information in an initial or amendment notice is entered into the registry record so as to be accessible to searchers of the public registry record;</p> <p>(c) The registry enters into the registry record and indexes or otherwise organizes information in an initial or amendment notice so as to make it accessible to searchers of the public registry record as soon as practicable and in the order in which the initial or amendment notice was submitted to the registry;</p> <p>(d) The registration of a cancellation notice is effective from the date and time when the previously registered notice to which it relates is no longer accessible to searchers of the public registry record; and</p> <p>(e) The registry maintains a record of the date and time when the previously registered notice to which a cancellation notice relates is no longer accessible to searchers of the public registry record.</p>	<p>(b) 등기소는 통지 정보가 등기기록에 입력되어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가능하게 된 일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p> <p>(c) 등기소는 최초 통지 또는 수정통지의 정보를 등기기록에 입력하거나 정렬(index)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정리(organize)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최초 통지 또는 수정통지가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에 따라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d) 말소통지의 등기는 이전에 등기된 관련 통지가 더 이상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가능하게 되지 않은 일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e) 등기소는 이전에 등기된 관련 통지가 더 이상 공공 등기기록의 검색자들에게 접근가능하게 되지 않은 일시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p>

원문	번역문
<p>Recommendation 12. Period of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of a notice 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Option A</p> <p>(a) The registration of an initial notice is effective for [a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five years, specified in the law of the enacting State];</p> <p>(b) The period of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may be extend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six months, specified in the law of the enacting State] before its expiry; and</p> <p>(c) The registration of an amendment notice extending the period of effectiveness extends the period for [the period of time specified in subparagraph (a)] beginning from the time of expiry of the current period.</p> <p>Option B</p> <p>(a) The registration of an initial notice is effective for the period of time indicated by the registrant in the designated field in the notice;</p> <p>(b) The period of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may be extended at any time before its expiry by the registration of an amendment notice</p>	<p>권고사항 제12항 (통지의 등기 유효기간)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선택지 A</p> <p>(a) 최초 통지의 등기는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짧은 기간 - 예컨대 5년 - 동안] 유효하다.</p> <p>(b) 등기의 유효기간은 그 만료 전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짧은 기간 - 예컨대 6개월 - 동안] 연장될 수 있다.</p> <p>(c)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수정통지의 등기는 현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로부터 [(a)항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한다.</p> <p>선택지 B</p> <p>(a) 최초 통지의 등기는 그 통지의 해당 란에 기재된 기간 동안 유효하다.</p> <p>(b) 유효기간은 해당 란에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재한 수정통지의 등기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 만료 전 언제라도 연장될 수 있다.</p> <p>(c)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수정통지의</p>

원문	번역문
<p>that indicates in the designated field a new period of effectiveness; and</p> <p>(c) The registration of an amendment notice extending the period of effectiveness extends the period for the amount of time specified by the registrant in the amendment notice beginning from the time of expiry of the current period.</p> <p>Option C</p> <p>(a) The registration of an initial notice is effective for the period of time indicated by the registrant in the designated field in the notice, not exceeding [a long period of time, such as, twenty years, specified in the law of the enacting State];</p> <p>(b) The period of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may be extended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six months, specified in the law of the enacting State] before its expiry by the registration of an amendment notice that indicates in the designated field a new period of effectiveness not exceeding [the maximum period of time specified in subparagraph (a)]; and</p> <p>(c) The registration of an amendment notice extending the period of</p>	<p>등기는 현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로부터 등기신청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한다.</p> <p>선택지 C</p> <p>(a) 최초 통지의 등기는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긴 기간 - 가령 20년]의 범위 내에서 등기신청인이 그 통지의 해당 란에 기재한 기간 동안 유효하다.</p> <p>(b) 등기의 유효기간은 그 유효기간 만료 전 [각국의 법률이 정하는 짧은 기간] 내에 해당란에 새로운 유효기간을 기재한 수정통지의 등기에 의하여 [(a)항에서 정하는 최장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다.</p> <p>(c)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수정통지의 등기는 현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로부터 등기신청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한다.</p>

원문	번역문
<p>effectiveness extends the period for the amount of time specified by the registrant in the amendment notice beginning from the time of expiry of the current period.</p>	
<p>Recommendation 13. Time when a notice may be registered</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a notice may be registered before or after the creation of a security right or the conclusion of a security agreement.</p>	<p>권고사항 제13항 (통지가登記될 수 있는 시점)</p> <p>登記규칙은 담보권의 성립 또는 담보설정계약의 체결 이전이나 이후 언제라도登記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14. Sufficiency of a single notice</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the registration of a single notice is sufficient to achieve the third-party effectiveness of one or more than one security right created by the grantor in favour of the same secured creditor in the encumbered asset described in the notice, whether they exist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r are created thereafter, and whether they arise from one or more than one security agreement between the same parties.</p>	<p>권고사항 제14항 (단일한 통지의 충분성)</p> <p>登記규칙은 단일한 통지의登記만으로 그 통지에 기술된 담보자산에 관하여 동일한 담보권자를 위해 담보설정자가 제공한 하나 또는 복수의 담보권에 대하여, 그 담보권이登記시점에 존재하였건 혹은 그 이후에 성립되었건, 또한 같은 당사자 사이에 하나의 담보설정약정으로부터 발생하였건 혹은 복수의 담보설정약정으로부터 발생하였건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15. Registration number</p> <p>For the purposes of recommendations 16, 18, 30, 32 and 34, the</p>	<p>권고사항 제15항 (登記번호)</p> <p>권고사항 16, 18, 30, 32, 34항의 목적을 위해登記규칙은登記소가 최</p>

원문	번역문
<p>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the registry assigns a unique registration number to an initial notice and associates all notices that contain that number with the initial notice.</p>	<p>초의 통지에 특정한 등기번호를 부여하고 그 등기번호를 포함하는 모든 통지들을 그 최초 통지와 연관시킨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16. Indexing or other organization of information in the registry record 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The registry indexes or otherwise organizes information in an initial or amendment notice in the public registry record so as to make the information accessible to a searcher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34 together with all notices that contain the same registration number; and</p> <p>(b) The registry indexes or otherwise organizes information in a cancellation notice in the registry archives so as to make the information retrievable by the registry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21 together with all notices that contain the same registration number.</p>	<p>권고사항 제16항 (등기기록 안의 정보정렬 또는 정리)</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등기소는 공공 등기기록에 있는 최초 통지 또는 수정통지의 정보를 정렬(index)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정리(organize)하여 권고사항 제34항에 따라 그 정보가 같은 등기번호를 가지는 모든 통지들과 함께 검색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b) 등기소는 등기기록 저장소(archive)에 있는 말소통지의 정보를 정렬(index)하거나 그 이외의 방법으로 정리(organize)하여 권고사항 제21항에 따라 그 정보가 같은 등기번호를 가지는 모든 통지들과 함께 검색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17. Integrity of the registry record 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Except as provided in recom-</p>	<p>권고사항 제17항 (등기기록의 진실성)</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권고사항 제19, 20항에 규정된 이</p>

원문	번역문
<p>mendations 19 and 20, the registry does not amend information in or remove information from the registry record; and</p> <p>(b) The registry protects the registry record from loss or damage, and provides for back-up mechanisms to allow reconstruction of the registry record.</p>	<p>외에는 등기소는 등기기록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p> <p>(b) 등기소는 등기기록이 분실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등기 기록의 재편성을 위한 백업 장치 (back-up mechanisms)을 제공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18. Copy of registered notice</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The registry sends as soon as practicable a copy of a registered notice to each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secured creditor at the address set forth in the notice, indicating the date and time when the registration of the notice became effective and the registration number;</p> <p>(b)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ten days,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 after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secured creditor has received a copy of the registered notic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of this recommendation, that person must send: (i) a copy of an initial notice to each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p>	<p>권고사항 제18항 (등기된 통지의 사본)</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등기소는 통지의 등기효력발생시점과 등기번호를 기재한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통지에 기재된 각 담보권자의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p> <p>(b) 이 권고사항 (a)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등기된 통지의 사본을 받은 때로부터 [각국의 법률에 의하여 정한 단기의 기간 - 가령 10일] 이내에 담보권자는 (i) 최초 통지의 사본을 통지에 담보설정자로 기재된 자의 주소로 발송하고, (ii) 수정통지 또는 말소통지의 사본을 통지에 기재된 담보설정자에게 등기기록에 기재된 가장 최근의 주소로 발송하거나, 통</p>

원문	번역문
<p>grantor at the address set forth in the notice; and (ii) a copy of an amendment or cancellation notice to each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grantor at the most recent address set forth in the registry record or, if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secured creditor knows that the address of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grantor has changed, at a current address of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grantor known to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secured creditor;</p> <p>(c) If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secured creditor does not know the current address of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grantor,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secured creditor should be entitled to use the last address known or an address reasonably available to that person (such as an address stated in the public registry record); and</p> <p>(d) The rule in subparagraph (c) of this recommendation applies also where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grantor has multiple addresses or no address in the State in which the registry is located.</p>	<p>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담보권자가 통지에 기재된 담보설정자의 주소변경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재 주소로 발송하여야 한다.</p> <p>(c)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자가 통지에 담보설정자로 기재된 자의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는 때에는,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자는 알려진 가장 최근의 주소 또는 (공공등기 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같이) 그에게 합리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주소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p> <p>(d) 이 권고사항 (c)항의 규칙은 통지에 담보설정자로 기재된 자가 다수의 주소를 가지거나 등기소가 소재한 국가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p>

원문	번역문
<p>Recommendation 19. Amendment of information in the public registry record</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Information in a registered notice may be amended by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secured creditor through the registration of an amendment notice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30, 31 or 33; and</p> <p>(b) The registration of an amendment notice does not result in the deletion or modification of information in registered notices to which the amendment notice relates.</p>	<p>권고사항 제19항 (공공등기기록에 있는 정보의 수정)</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등기된 통지 내의 정보는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자가 권고사항 제30, 31 또는 33항에 따라 수정통지를 등기함으로써 수정될 수 있다.</p> <p>(b) 수정통지의 등기는 그 수정통지가 관련되어 있는 통지등기 내 정보의 삭제 또는 수정을 초래하지 않는다.</p>
<p>Recommendation 20. Removal of information from the public registry record</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information in a registered notice is removed from the public registry record upon the expiry of its period of effectiveness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3 or upon registration of a cancellation notice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32 or 33.</p>	<p>권고사항 제20항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의 정보 제거)</p> <p>등기규칙은 권고사항 제1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하거나 권고사항 제 32 또는 33항에 따라 말소통지가 등기됨으로써 등기된 통지 안의 정보가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제거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21. Archival of information removed from the public registry record</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information removed from the public</p>	<p>권고사항 제21항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제거된 정보의 저장)</p> <p>등기규칙은 권고사항 제20항에 따라 공공등기기록으로부터 제거된 정보는 최소한 [예컨대 20년과 같이 각</p>

원문	번역문
<p>registry record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20 is archived for a period of at least [a long period of time, such as, for example, twenty years,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 in a manner that enables the information to be retrieved by the registry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6, subparagraph (b).</p>	<p>국에 의하여 규정된 장기간 동안) 권고사항 제16항 (b)항에 따라 등기소에 의하여 정보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따라 정보가 저장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22. Language of a notice 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the information in a notice must be expressed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 and in the character set determined and publicized by the registry.</p>	<p>권고사항 제22항 (통지의 언어) 등기규칙은 통지 안의 정보는 [각국이 정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언어]에 의하여 등기소가 결정하여 공개한 문자 모음 내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IV. Registration of initial notices</p>	<p>IV. 최초 통지의 등기</p>
<p>Recommendation 23. Information required in an initial notice 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a) An initial notice must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the designated field: (i) The identifier of the grantor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s 24-26, the address of the grantor [and any other information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 to</p>	<p>권고사항 제23항 (최초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 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최초 통지는 해당 란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i) 권고사항 제24 내지 26항에 따라 결정되는 담보설정자의 식별자, 담보권자의 주소 [그리고 담보설정자를 특정하여 식별하기 위해 그 이외에 각국에 의하여 규정되는 다른 정보]</p>

원문	번역문
<p>assist in uniquely identifying the grantor];</p> <p>(ii) The identifier of the secured creditor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27 and the address of the secured creditor;</p> <p>(iii) A description of the encumbered assets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28;</p> <p>[(iv) The period of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13; and</p> <p>(v) The maximum monetary amount for which the security right may be enforced]; and</p> <p>(b) If there is more than one grantor or secured creditor, the required information must be entered in the designated field separately for each grantor or secured creditor.</p>	<p>(ii) 권고사항 제27항에 따라 결정되는 담보권자의 식별자, 그리고 담보권자의 주소</p> <p>(iii) 권고사항 제28항에 따른 담보자산의 기술</p> <p>[(iv) 권고사항 제13항에 따른 등기의 유효기간</p> <p>(v)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는 최고액]</p> <p>(b) 둘 이상의 담보설정자 또는 담보권자가 있는 때에는 입력이 요구되는 정보는 해당란에 각각의 담보설정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해 별도로 입력되어야 한다.</p>
<p>Recommendation 24. Grantor identifier (natural person)</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if the grantor is a natural person:</p> <p>(a) The grantor identifier is the name of the grantor;</p> <p>(b) [The enacting State should speci-</p>	<p>권고사항 제24항 (담보설정자의 식별자(자연인))</p> <p>등기규칙은 담보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는 담보설정자의 이름이다.</p> <p>(b) [각국은 담보설정자의 이름의</p>

원문	번역문
<p>fy the various components of the grantor’s name and the designated field for each component];</p> <p>(c) [The enacting State should specify the official documents on the basis of which the grantor’s name should be determined and the hierarchy among those official documents]; and</p> <p>(d) [The enacting State should specify the way in which the grantor’s name should be determined in the case of a name change after the issuance of an official document].</p>	<p>다양한 요소와 각 요소를 위한 해당란을 특정하여야 한다.)</p> <p>(c) [각국은 담보설정자의 이름을 결정할 공식적인 서류들과 그 서류들 간의 우선순위를 특정하여야 한다.]</p> <p>(d) [각국은 공식서류의 발급 이후 이름이 변경된 경우에 어떻게 담보설정자의 이름을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25. Grantor identifier (legal person)</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if the grantor is a legal person:</p> <p>(a) The grantor identifier is the name of the grantor; and</p> <p>(b) The name of the grantor is the name specified in a current [document, law or decree,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 constituting the legal person.</p>	<p>권고사항 제25항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법인))</p> <p>등기규칙은 담보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는 담보설정자의 법인명이다.</p> <p>(b) 담보설정자의 법인명은 [각국이 특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는 현재의 문서, 법 또는 시행령에 의하여] 특정된다.</p>
<p>[Recommendation 26. Grantor identifier (special cases)</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권고사항 제26항 (담보설정자의 식별자(특별한 경우))</p> <p>등기규칙은 [당해 주체가 도산절차</p>

원문	번역문
<p>[the enacting State should specify the grantor identifier in special cases, such as a person that is subject to insolvency proceedings and a trustee or representative of an estate].</p>	<p>중에 있거나 재산의 위탁자 또는 대표자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 관한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27. Secured creditor identifier</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If the secured creditor is a natural person, the identifier is the name of the secured creditor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24;</p> <p>(b) If the secured creditor is a legal person, the identifier is the name of the secured creditor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25; and</p> <p>(c) If the secured creditor falls within the special cases referred to in recommendation 26, the identifier is the name a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26.</p>	<p>권고사항 제27항 (담보권자의 식별자)</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담보권자가 자연인이라면 그 식별자는 권고사항 제24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름이다.</p> <p>(b) 담보권자가 법인이라면 그 식별자는 권고사항 제25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름이다.</p> <p>(c) 담보권자가 권고사항 제26항에서 언급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식별자는 권고사항 제26항에 따라 결정되는 이름이다.</p>
<p>Recommendation 28. Description of encumbered assets</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The encumbered assets must be described in the designated field of the notice in a manner that reasonably allows their identification;</p>	<p>권고사항 제28항 (담보자산의 기술)</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담보자산은 이를 합리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의 해당란에 기술되어야 한다.</p> <p>(b) 어떤 범주 안에 있는 동산 자산</p>

원문	번역문
<p>(b) A generic description that refers to all assets within a category of movable assets includes all of the grantor’s present and future assets within the specified category; and</p> <p>(c) A generic description that refers to all of the grantor’s movable assets includes all of the grantor’s present and future movable assets.</p>	<p>전체를 언급하는 일반적 기술은 그 특정한 범주에 포함되는 담보설정자의 모든 현재 또는 장래의 자산을 포함한다.</p> <p>(c) 담보설정자의 모든 동산 자산을 언급하는 일반적 기술은 담보설정자의 모든 현재 또는 장래의 동산자산을 포함한다.</p>
<p>Recommendation 29. Incorrect or insufficient information</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The registration of an initial notice, or an amendment notice that changes the grantor’s identifier or adds a grantor, is effective only if the notice provides the grantor’s correct identifier as set forth in recommendations 24-26 or, in the case of an incorrect identifier, if the notice would be retrieved by a search of the public registry record using the grantor’s correct identifier;</p> <p>(b) 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c) of this recommendation, an incorrect or insufficient statement of the information required in a notice other than the grantor’s identifier does not render the registration of a notice ineffective, unless the incorrect</p>	<p>권고사항 제29항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정보)</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최초 통지, 또는 담보설정자의 식별자를 변경하거나 담보권자를 추가하는 수정 통지의 등기는 그 통지가 권고사항 제24 내지 26항에 규정된 담보권자의 정확한 식별자를 제공하는 때에 한하여 유효하고, 부정확한 식별자가 제공된 경우에는 공공등기 기록에서 담보권자의 정확한 식별자를 사용하여 검색할 때 그 통지가 추출될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p> <p>(b) 이 권고사항 (c)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자의 식별자 이외에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기술은 그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기술이 합리적 검색자를 심각하게 오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통지의 등기를 무효로</p>

원문	번역문
<p>or insufficient statement would seriously mislead a reasonable searcher;</p> <p>[(c) An incorrect statement in a notice with respect to the period of effectiveness of the registration of a notice and the maximum amount for which the security right may be enforced does not render the registration of the notice ineffective, except to the extent that it seriously misled third parties that relied on the registered notice;]</p> <p>(d) An insufficient identifier of a grantor in a notic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a) of this recommendation does not render the registration of a notice ineffective with respect to other grantors sufficiently identified in the notice;</p> <p>(e) An insufficient description of encumbered assets in a notice does not render the registration of a notice ineffective with respect to other encumbered assets sufficiently described in the notice; and</p>	<p>만들지 않는다.</p> <p>〔(c) 등기의 유효기간과 담보권이 실행될 수 있는 최고액에 관한 통지에 대한 부정확한 기술은 그것이 등기된 통지를 신뢰하는 제3자를 심각하게 오도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통지의 등기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p> <p>(d) 이 권고사항 (a) 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 담보설정자의 식별자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충분히 식별된 다른 담보설정자에 관하여는 그 통지의 등기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p> <p>(e) 담보자산의 불충분한 기술은 그 통지에서 충분히 기술된 다른 담보자산에 관하여는 그 통지의 등기를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p>
<p>V. Registration of amendment and cancellation notices</p>	<p>V. 수정 통지와 말소 통지의 등기</p>
<p>Recommendation 30. Information required in an amendment notice</p>	<p>권고사항 제30항 (수정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p>

원문	번역문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An amendment notice must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in the designated field:</p> <p>(i)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initial notice to which the amendment relates; and</p> <p>(ii) If information is to be added, deleted or changed, the information to be added, deleted or changed in the manner for entering the relevant kind of information in an initial notice in accordance with recommendation 23; and</p> <p>(b) An amendment notice may relate to one or multiple items of information in a notice.</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수정 통지는 해당란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p> <p>(i) 수정과 관련된 최초 통지의 등기번호</p> <p>(ii) 정보가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면, 권고사항 제23항에 따라 최초 통지에 관련된 유형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방식에 따라 그 추가, 삭제 또는 변경될 정보</p> <p>(b) 수정 통지는 통지 안의 하나 또는 여러 유형의 정보와 관련될 수 있다.</p>
<p>Recommendation 31. Global amendment of secured creditor information in multiple notices</p> <p>Option A</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the person identified in the notice as the secured creditor named in multiple registered notices may amend its information in all these notices with a single global amendment.</p>	<p>권고사항 제31항 (복수의 통지에 있어서 담보권자 정보의 종합 수정)</p> <p>선택지 A</p> <p>등기규칙은 복수의 등기된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자는 하나의 종합 수정으로 그 모든 통지들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원문	번역문
<p>Option B</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a secured creditor named in multiple registered notices may request the registry to amend its information in all these notices with a single global amendment.</p>	<p>선택지 B</p> <p>등기규칙은 복수의 등기된 통지에 담보권자로 기재된 자는 하나의 종합 수정으로 그 모든 통지들의 정보를 수정하도록 등기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32. Information required in a cancellation notice</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a cancellation notice must contain in the designated field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initial notice to which the cancellation relates.</p>	<p>권고사항 제32항 (말소 통지에 요구되는 정보)</p> <p>등기규칙은 말소 통지는 해당란에 말소와 관련된 최초 통지의 등기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33. Compulsory amendment or cancellation</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The secured creditor must register an amendment or cancellation notice, as the case may be, if:</p> <p>(i) The registration of an initial or amendment notice has not been authorized by the grantor at all or to the extent described in the notice;</p> <p>(ii) The registration of an initial or amendment notice has been authorized by the grantor but the authorization has been withdrawn and no security agreement has been con-</p>	<p>권고사항 제33항 (강제 수정 또는 말소)</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담보권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정 또는 말소 통지를 등기하여야 한다.</p> <p>(i) 최초 또는 수정통지의 등기가 담보설정자에 의해 전혀 또는 통지에 기술된 정도로까지는 승인되지 않은 때</p> <p>(ii) 최초 또는 수정통지의 등기가 담보설정자에 의해 승인되었으나 그 승인이 철회되었고 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때</p> <p>(iii) 담보설정계약이 수정됨으로써 통지 안에 포함된 정보를 부정확하</p>

원문	번역문
<p>cluded;</p> <p>(iii) The security agreement has been revised in a way that make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notice incorrect or insufficient; or</p> <p>(iv) The security right to which the notice relates has been extinguished by payment or other performance of the secured obligation or otherwise and there is no further commitment by the secured creditor to extend credit;</p> <p>(b) In the case of subparagraphs (a)(ii) to (a)(iv) of this recommendation, the secured creditor may charge any fee agreed upon with the grantor;</p> <p>(c) Not later than [a short period of time, such as fifteen days,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 after receipt of a written request from the grantor, the secured creditor is obliged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 under subparagraph (a) of this recommendation;</p> <p>(d) Notwithstanding subparagraph (b) of this recommendation, no further fee or expense may be charged or accepted by the secured creditor if it</p>	<p>거나 불충분하게 만들었을 때</p> <p>(iv) 당해 통지가 관련된 담보권이 변제 기타 피담보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소멸되었고 담보권자가 신용을 추가로 공여한다는 약속이 없을 때</p> <p>(b) 이 권고사항 (a) (ii)부터 (a) (iv)까지의 경우에 담보권자는 담보설정자와 합의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c) 담보설정자로부터 서면요청을 받은 뒤 [각국에 의해 정해지는 짧은 기간, 예컨대 15일] 내에 담보권자는 이 권고사항 (a)항에 따른 의무에 따라야 한다.</p> <p>(d) 이 권고사항 (b)항에도 불구하고 이 권고사항 (c)항에 따라 담보설정자로부터 받은 서면요청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에 의해 추가의 수수료나 비용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p> <p>(e) 담보권자가 이 권고사항 (c)항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설정자는 상황에 따라 약식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수정 또는 말소통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p> <p>(f) 담보설정자는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이 있는 경우에는 이 권고사항 (c)항에 기재된 기간의 만료 전에도 상황에 따라 약식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통해 수정 또는 말소통지의 등기를 신청</p>

원문	번역문
<p>complies with the written request from the grantor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c) of this recommendation;</p> <p>(e) If the secured creditor does not comply within the time period provided in subparagraph (c) of this recommendation, the grantor is entitled to seek the registration of an amendment or cancellation notice, as the case may be, through a summary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dure;</p> <p>(f) The grantor is entitled to seek the registration of an amendment or cancellation notice, as the case may be, through a summary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dure even before expiry of the period stated in subparagraph (c) of this recommendation, provided that there are appropriate mechanisms to protect the secured creditor; and</p> <p>(g) The amendment or cancellation notice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s (e) and (f) of this recommendation is registered by</p> <p>Option A</p> <p>the registry as soon as practicable upon receipt of the notice with a copy of the relevant judicial or ad-</p>	<p>할 수 있다.</p> <p>(g) 이 권고사항 (e)항과 (f)항에 따른 수정 또는 말소통지는</p> <p>선택지 A</p> <p>관련 사법 또는 행정명령 사본이 첨부된 통지의 수령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등기소에 의해 등기되어야 한다.</p> <p>선택지 B</p> <p>관련 사법 또는 행정명령이 발령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법 또는 행정 담당관에 의해 등기되어야 한다.</p>

원문	번역문
<p>ministrative order attached.</p> <p>Option B</p> <p>a judicial or administrative officer as soon as practicable upon issuance of the relevant judicial or administrative order with a copy thereof attached.</p>	
<p>VI. Search criteria and search results</p>	<p>VI. 검색 기준과 검색 결과</p>
<p>Recommendation 34. Search criteria</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 the criterion by which a search of the public registry record may be conducted is:</p> <p>(a) The grantor identifier; or</p> <p>(b) The registration number.</p>	<p>권고사항 제34항 (검색기준)</p> <p>등기규칙은 공공등기기록의 검색이 행해지는 기준이</p> <p>(a) 담보설정자의 식별자이거나</p> <p>(b) 등기번호</p> <p>라는 점을 규정하여야 한다.</p>
<p>Recommendation 35. Search results</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a) The registry provides a search result that indicates the date and time when the search was performed and either sets forth all information in each registered notice that matches the specified search criterion or indicates that no registered notice matched the search criterion;</p> <p>(b) A search result reflects information in the public registry record that matches exactly the search criterion except [in cases, in which a</p>	<p>권고사항 제35항 (검색결과)</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a) 등기소는 검색이 수행된 일시를 나타내는 검색결과를 제공하여야 하고, 특정된 검색기준에 상응하는 각각의 등기된 통지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검색기준에 상응하는 통지된 등기가 없다는 점을 나타내야 한다.</p> <p>(b) 검색결과는 [검색기준에 유사하게 상응하는 공공등기기록의 정보를 나타내고, 이때 무엇이 유사하게 상응하는 것인지에 대해 등기소가 사용할 규칙을 각국이 정하는 경우]</p>

원문	번역문
<p>search result may reflect information in the public registry record that closely matches the search criterion and the rules used by the registry to determine what constitutes a close match,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p> <p>(c) Upon request made by searcher, the registry issues an official search certificate indicating the search result.</p>	<p>를 제외하고는 검색기준에 정확하게 상응하는 공공등기기록상의 정보를 반영하여야 한다.</p> <p>(c) 검색자의 요청에 따라 등기소는 검색결과를 나타내는 공식적인 검색 증명서를 발급한다.</p>
<p>VII. Registration and search fees</p>	<p>VII. 등기 및 검색 수수료</p>
<p>Recommendation 36. Fees for the services of the registry</p> <p>The regulation should provide that:</p> <p>Option A</p> <p>(a) The following fees are payable for the services of the registry:</p> <p>(i) Registration of a notice:</p> <p>a. Paper [...];</p> <p>b. Electronic [...];</p> <p>(ii) Searches:</p> <p>a. Paper [...];</p> <p>b. Electronic [...];</p> <p>(iii) Certificates:</p> <p>a. Paper [...];</p> <p>b. Electronic;</p>	<p>권고사항 제36항 (등기소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p> <p>등기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p> <p>선택지 A</p> <p>(a) 다음 수수료는 등기소 서비스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다.</p> <p>(i) 통지의 등기</p> <p>a. 종이 형태 [...]</p> <p>b. 전자 형태 [...]</p> <p>(ii) 검색</p> <p>a. 종이 형태 [...]</p> <p>b. 전자 형태 [...]</p> <p>(iii) 증명서</p> <p>a. 종이 형태 [...]</p> <p>b. 전자 형태 [...]</p> <p>(b) 등기소는 등기소의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와 계약을</p>

원문	번역문
<p>(b) The registry may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a person that satisfies all registry terms and conditions and establish a registry user account to facilitate the payment of fees.</p> <p>Option B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 may determine the fees and methods of payment for the services of the registry by decree.</p> <p>Option C The following services of the registry are free of charge [registration services, searching services or electronic searching services to be specified by the enacting State.]</p>	<p>체결하고 수수료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등기소 이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다.</p> <p>선택지 B 〔각국이 정하는 행정 당국〕은 규정으로 등기소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그 지급방법을 정할 수 있다.</p> <p>선택지 C 등기소의 다음 서비스 [등기 서비스, 검색 서비스 또는 전자 검색 서비스 등 각국이 정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다.</p>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현진,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경인문화사, 2013.
- 법원행정처, 동산·채권 담보등기 해설, 2012.
-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2007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2007.
- 석광현,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법무부, 2010.
- 안형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10.
- Joseph. J. Norton & Mads Andenas ed., Emerging Financial Markets and Secured Transactions, 1998.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논 문

- 김재형, “담보제도의 개혁방안-동산 및 채권의 담보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106호 (2008. 9).
- 김재형, “UNCITRAL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초안」 논의”, 비교사법 제13권 제4호 (2006. 12).
- 석광현, “UNCITRAL의 담보권 입법지침과 우리나라의 동산·채권 담보법제”, 통상법률 통권 제88호 (2009. 8).
- 손승우, “UNCITRAL 지식재산권 담보논의와 국내 입법방향”,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2008).

참 고 문 헌

정소민, “채권담보제도의 현대화 - DCFR과 우리나라의 채권담보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제61호 (2012. 12).